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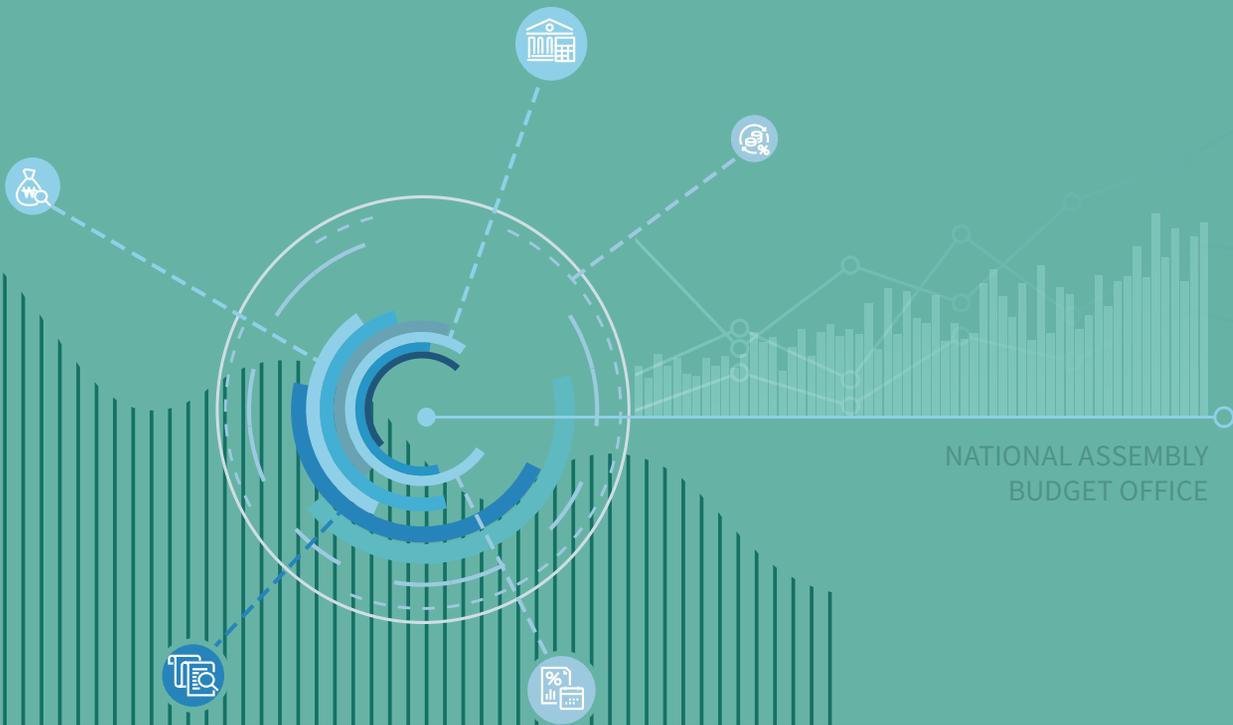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I 예산안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정무위원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성노 예산분석관

신지현 예산분석관

지원 | 정진아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

II. 주요 사업 분석 / 9

- 1.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등 9
- 2.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의 사업출연금 예산 재검토 필요 16
- 3.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등 20

[국가보훈부]

I. 예산안 개요 / 27

- 1. 현 황 2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4



CONTENTS

II. 주요 사업 분석 / 36

1.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규모 조정 검토 필요 36
2. 신규사업인 정부기념식 관리 시스템의 범정부 사용 관련 고려사항 40
3.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진행률을 고려한 감액 검토 필요 등 45
4. 시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의 1차년도 사업성과와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필요 52

[국민권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59

1. 현 황 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2

II. 주요 사업 분석 / 63

1. 특별행정심판기관 참여 추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63

[공정거래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73

- 1. 현 황 7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6

II. 주요 사업 분석 / 77

- 1.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과의 공동·연계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필요 77
- 2.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의 자체수입 및 관련 지출 누락분 계상 필요 85

[금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91

- 1. 현 황 9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8

II. 주요 사업 분석 / 100

- 1. 테스트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재검토 필요 등 100
- 2.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보증공급 확대 필요 등 109
-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의 관련 법령 취지 부합 여부 검토 필요 등 115

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규모 축소 고려 필요 등	126
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정출자액 조정 필요	1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145

1. 현 황	14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9

II. 주요 사업 분석 / 150

1.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성격 및 활용도에 따른 재정지원 검토 필요	150
2.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사업 내 신규사업 예산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5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00만원이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86	23	23	-	-
합 계	286	23	23	-	-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6,59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6억원(2.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474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6억원이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18,832	664,685	647,415	△17,270	△2.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028	11,930	11,631	△299	△2.5
합 계	629,860	676,615	659,046	△17,569	△2.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592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100만원(2.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3명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54,305	57,861	59,222	1,361	2.4
국무조정실	34,947	37,120	38,169	1,049	2.8
국무총리비서실	8,589	8,991	9,443	452	5.0
조세심판원	10,769	11,750	11,610	△140	△1.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41	638	△3	△0.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3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800만원(13.5%) 감소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00만원(1.8%)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1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500만원(19.9%) 감소하였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2,174	16,095	13,927	△2,168	△13.5
총액인건비 대상	4,214	4,738	4,825	87	1.8
총액인건비 비대상	7,960	11,357	9,102	△2,255	△19.9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23년 8.0억원 → 2024년 22.4억원), ②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35.1억원), ③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5.3억원), ④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1.8억원), 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1.7억원) 등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다룰 수 있는 확장성이 확보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24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항목별 지침”인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은 정보화 예산 요구 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이행했어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청년센터는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온라인 청년센터 홍보 예산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교육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이 8월에 이루어지고,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의 기간이 모집(7월 초)부터 최종 심사 및 시상식(11월 말)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8개월의 인건비는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46억 300만원 규모이다.

신규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2022.1)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연구·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관으로 설치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05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2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169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183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3,509
합 계		4,60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규제개혁 정보화,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국무총리 공관관리, 조세심판 정보화 등이 있다.

①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은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은 청년인턴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며, ③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은 총리공관의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소요경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홈페이지 기능 등 개선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개)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802	2,237	1,435	178.9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35	478	243	103.4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1,126	726	181.5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83	433	150	53.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등

가. 현황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¹⁾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5²⁾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35억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4년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	-	3,509	3,509	순증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통합 워크넷 서버에 구성된 ‘온라인 청년센터’를 민간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고,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사전자격 진단서비스 구현 등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35-324

2)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추진경위]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주요 과제로 반영(2022.5.)
-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 관리 주체를 고용부에서 국조실로 이관(2022.7.)
-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2.11.)
- ▶「청년기본법」제24조의5 신설(2023.3.21.)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3-5-3 “청년정책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반영(2023.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의 추진 경위는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의 관리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로 2022년 7월 이관하게 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³⁾을 2022년 11월에 수립하였고, 「청년기본법」 제 24조의5(2023.3.21.)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나. 분석의견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다룰 수 있는 확장성이 확보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2024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안은「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의 “항목별 지침”인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2022년에 ‘청년정책 총괄 및 조정 사업’의 정책연구비를 일반연구비로 전용(9,000만원, '22.6.17.)하여 수행함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통합 워크넷 서버에 구성된 ‘온라인 청년센터’를 민간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고,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사전자격 진단서비스 구현 등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중 청년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누락방지 및 탐색시간을 감축하고자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사업이 워크넷 서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신규)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여 확장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량 동시접속자(6만명 이상) 대상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유연성·확장성을 확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서비스(내·외부 20여종)서버(48대)를 클라우드 서버(3대)로 대체하여 최소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민간클라우드 활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제출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가)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11억 6,700만원)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11억 9,700만원)과 다양한 청년 정책 관련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 비용(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 인프라 구축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4억 3,600만원)와 조달청 품목인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1억 5,600만원), 클라우드 사용료(3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항목	산출근거 ¹⁾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2,410	(가)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²⁾	응용 SW 개발 = 1,167 상용 SW 도입 = 1,197 청년정책 분류체계 컨설팅 = 45
		소 계	2,410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969	(나)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환경 세팅비 = 436 상용 SW 도입 = 156 클라우드 사용료 = 377
		소 계	969
감리	130	(다) 감리사업계약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사업 계약 비용=130
		소 계	130
합 계	3,509	합 계	3,509

주: 1) (가) 상용 SW 도입(11억 9,700만원)은 조달품목이 아닌 일괄발주 대상 품목이고, (나) 상용 SW 도입(1억 5,600만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조달품목으로 직접 구매대상으로 차이가 있음

2) 인공지능 챗봇SW, 검색서버SW, ESB 연계SW, 데이터 분석 솔루션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정보화 예산 중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항목별 지침”에 따르면, i) 조달단가, ii) 적정가격, iii) 견적가, iv) 기존 보유 여부, v) 신규 수요 발생 시 조달 단가 적용, vi) 불법 소프트웨어 활용 방지, vii)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 항목별 지침 적용 여부]

구분	편성기준	적용 여부
iv) 기존 보유 여부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 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 6가지 검토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

웨어의 활용가능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 청년센터의 인프라 중 리포팅 툴⁴⁾이 소프트웨어이고, 사양도 충분해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보유 소프트웨어 및 신규 구매 예정 소프트웨어 현황]

(단위: 백만원)

기존 보유 SW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구매 SW	
품목	단가	품목	산출 근거 및 단가
리포팅 툴 M2Soft CROWNIX Report 28Core	120	공공마이데이터보안 (포에스엘)SecuPDS v1.0	120
		신규 구매 SW 리포팅 툴 (Raum Soft)CLIP Report v5.0 8Core	36
합 계	120	합 계	15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일반연구비) 비용 중 리포팅 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 금액(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관련 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예산 요구 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 정보보호 대책 및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⁵⁾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정보화 사업은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관

4) 리포팅 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등 결과값을 표, 그래프를 활용한 보고서로 출력하는 개발툴 (소프트웨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사용하는 리포팅툴 제품명이 M2Soft사의 CROWNIX Report 이고, 라이선스가 28Core(단위)*1량(수량)으로 28Core임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 4가지를 살펴보면, ① 관리적 보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연간업무추진계획 등 내부 지침 및 절차서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② 기술적 보안⁶⁾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응용프로그램 보안, DB 접근제어,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내부직원 및 외부용역직원 보안을 의미하며, ③ 보안관리 서비스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며, 보안관제를 통해 해킹 및 침해위험을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자체 보안관제 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④ 보안문화 내재화는 보안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4가지 측면을 모두 관리·점검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상으로 ② 기술적 보안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의 서버 중심에서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보안관제 측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

6) ②기술적 보안 구체적 설명

- 네트워크 보안 : 해킹 등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침입을 감지하고 원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 시스템-응용프로그램 보안 : 인증된 사용자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격접근통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 허가된 응용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점검 및 보안조치
- DB 접근제어 : 개인정보가 보관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권한별 데이터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사용자의 DB 접근을 제어함
- 개인정보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암호화 조치 실시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조회출력파일다운로드 내역 등 사후추적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해당 접속기록을 점검
- 내부직원 및 외부용역직원 보안 : 사용자 인터넷 PC 및 내부업무 PC 망분리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안티백신, 보안USB, 무선차단, 스팸차단, 외부메일 차단, 외부메신저 차단 등 많은 보호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차단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 등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및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비교]

구분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신규)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소관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운영시기	2019 ~ 2024년		2025년 ~	
인프라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 기능 추가 및 개선에 한계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기능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확장성 확보 ²⁾	
예산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3,775백만원	-	-	3,509백만원
정보보호대책 및 관련 법 ¹⁾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	① 관리적 보안 ② 기술적 보안 ③ 보안관리 서비스 ④ 보안문화 내재화	△	② 기술적 보안

주: 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2) IT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플랫폼을 임차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능개선에 필요한 개발기간 단축 및 설비투자비용 절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므로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기술적 보안만을 조치하여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관제의 취약성과 관련한 우려⁷⁾가 있으며, 해킹 및 침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서비스를 미조치한 상태에서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기술적 보안 사항 외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조속히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정보보호대책 및 관련 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사항인 4가지 측면을 조속히 보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7)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위협은 대표적 편익성으로 제시되는 자원활용의 효율성, 자원할당 간편화, 가상화, 물리자원의 공유로 인한 부분이 주요 위협요소이고 ① 관리적 보안 위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적용, 정보의 외부 위탁, 자원의 공유, 다양한 단말기의 접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② 기술적 보안위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함에 따라 보안위협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보안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사업¹⁾은 일자리·주거·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5,400만원이 감액된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¹⁾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3,796	8,843	9,094	251	2.8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²⁾	-	3,775	2,321	△1,454	△38.5

주: 1) 2022년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편성 및 결산을 진행함

2)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 관리 주체를 이관(고용부→국조실, '22.7.)함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제5항²⁾에 근거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출연으로 2023년 예산 37억 7,500만원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온라인 청년센터는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온라인 청년센터 홍보 예산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35-316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024년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³⁾을 위한 유지보수 위탁 운영비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② 청년정책 및 활동공간 정보수집·제작 예산안은 “청년정책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이 2023년 7월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5,000만원 감액되었다. 다음으로, ③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운영 예산안은 일반상담 위탁운영 비용 11억 8,000만원과 현재 청년정책허브센터(민간건물)⁴⁾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 기획운영팀의 사무실 임차계약이 2024년 9월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사무실 이전 비용(8,500만원) 등으로 15억 6,500만원이 반영되었다.⁵⁾

마지막으로, ④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온라인 광고에 1억 5,500만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위탁에 2억 3,500만원 등 총 4억원이 편성되었다.

3) “청년정책 정보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의 수집 방식을 개선하여 실시간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 운영기관의 정책내용 변동(신규 등록·변경·폐지 등)이 온라인 청년센터에 자동(요청→승인) 반영되도록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정보 수집·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수집하는 기존 방법이 공문 송·수신을 통한 수작업이었다면, “청년정책 정보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에서는 청년정책을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정책 수집 및 탐색 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도 기존 사이트 방문을 통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전환함

4) 청년정책허브센터(민간건물):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함

5)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청년정책허브센터와 같은 지역(충북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2023 예산	2024 예산(안)	산출근거
사업 출연금	① 홈페이지 운영	161	200	-홈페이지 유지 관리 190(1식×19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및 서브스크립션 구매 10 소 계 200
	② 청년정책 및 활동공간 정보 수집·제작	1,405	156	-온오프라인 민간콘텐츠 제휴 및 구매 140 -청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16 소 계 156
	③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운영	1,809	1,565	-일반상담 위탁운영 비용 1,180 -건물임차료 76(8.5×9개월) -건물관리비 42(4.7×9개월) -회원관리 및 본인인증 사용료 100(1식×100) -사무실 이전 비용 85 -기타 운영비용 82 소 계 1,565
	④ 사업활성화	400	400	-옥외광고 45(버스20, 지하철20, 광고물 제작5), -온라인 광고 110(배너60, 검색40, 광고물 제작10) -온라인청년센터 인지도조사 10 (설문조사지 구성의뢰5, 배너제작2, 홍보3)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위탁 235 소 계 400
소 계		3,775	2,321	
합 계			2,32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온라인 청년센터는 2024년까지만 운영되고 해당 기능은 앞으로 구축될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에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에 온라인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등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사업출연금 정비 기준의 하나로 ‘행사·홍보성 경비는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⁶⁾ 곧 종료될 사업에 대한 홍보성 경비가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이 종료된 후에 기

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5., 258쪽

투입된 홍보 예산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홍보성 경비 예산안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종료로 인한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자원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하여, 기존 통합 워크넷 시스템의 정보자원⁷⁾은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종료 후, 워크넷 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으로 귀속될 예정이지만,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만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서버⁸⁾는 워크넷 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으로 재편입될지, 또는 향후 구축 예정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인프라로 이전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온라인 청년센터는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동 사업의 홍보 예산안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통합워크넷 시스템: WEB서버(1), WAS서버(2), 일자리DB(2), 테스트 및 개발서버(1), 검색서버(2), 검색 SW(엔진)(1)

8) 신규 도입 인프라 : 수집 및 색인 서버(1), 수집SW(엔진)(2), 리포팅 툴(reporting tool)(2)

가. 현황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¹⁾은 복지 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를 위한 대응 등 재정수요 증가 및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재정준칙 확립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년층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연금	33,796	37,982	37,818	△164	△0.4
청년 재정교육 운영	193	160	160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분석의견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교육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이 8월에 이루어지고,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의 기간이 모집(7월 초)부터 최종심사 및 시상식(11월 말)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8개월의 인건비는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548-301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²⁾)을 외부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의 이해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며, 20분 내외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강의 4강(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클래스)을 수료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휴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 합격자를 선발한다.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운영 세부내역]

운영 내역	기간	주요 내용	
①모집	'22.7.4.~'22.7.31.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클래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내 지원하기 링크 접속	
②비대면 재정교육	'22.7.21.~'22.8.3.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별 20분 내외 (4강 수강)	
③서류전형	'22.7.22.~'22.8.4.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 서류전형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휴 학생 중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클래스” 수료자	
④면접대상자 발표	'22.8.5.	선발 결과 : 총 100명(20개팀)	
⑤면접전형(온라인)	'22.8.8.~'22.8.9.		
⑥최종합격자 발표	'22.8.10.		
⑦발대식	'22.8.13.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1기 출범 및 비전 선포, 운영 목적 소개	
⑧ 멘토링 워크숍	1차	'22.9.3.	자문위원 그룹과 면대면 멘토링 워크숍 진행, 팀별 주제 선정 및 보고서 전개방향 논의
	2차	'22.9.24.	자문위원 그룹과 면대면 워크숍 진행, 주제 관련 팀별 문제의식 점검 및 조사 방법론 점검
	3차	'22.10.15.	자문위원 그룹과 비대면 멘토링 워크숍 진행, 팀별 선정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점검 및 피드백 제공
⑨보고서 제출	'22.11.9.	20개 팀별 주제 선정 과제 ¹⁾ 를 토대로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⑩발표 자료 제출	'22.11.17.		
⑪최종 심사	'22.11.19.	심사위원 간담회, 팀별 정책분석보고서 핵심 내용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결과 종합	
⑫최종 보고대회	'22.11.26.	경제부총리상, 한국조세연구원장상, 한국경제신문대표이사상,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상 시상	

주: 1) 1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팀:드림스타트, 5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6팀:아이돌돌봄지원사업, 7팀:국민연금 실업크레딧, 8팀:디지털 배움터, 9팀:초등돌봄교실, 10팀: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1팀:지역아동센터, 12팀:가족친화지원사업, 13팀:다함께돌봄사업, 14팀:국민내일배움카드, 15팀:청년농업인육성정책, 16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 사업단), 17팀:치매관리체계구축, 18팀: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사업, 19팀: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팀:커뮤니티케어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1991년)으로 ‘건전재정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포럼은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세대가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교육을 수행함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 합격자로 선발된 대학생으로 구성된 20개 팀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재정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정투입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3차례의 전문가 멘토링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팀에게 포상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2024년 예산안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대략 6,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는 사업을 대행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8개월 간의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다.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항목	산출근거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	5	전문가 활용비	청년 재정교육 위탁관련 외부회계감사: 4,000,000원×1회=4,000천원 사업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500,000원×2회=1,000천원		
		소 계	5		
	155	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	- 인건비= 68,495천원 ·책임연구원 : 3,327,026원×1명×8월×0.5=13,308천원 ·연구원 : 2,551,119원×2명×8월×0.6=24,491천원 ·연구보조원 : 1,705,337원×3명×8월×0.5=20,464천원 ·보조원 : 1,279,046원×2명×8월×0.5=10,232천원 평가회의 30,000원×10명×3회=900천원 참가대학생(가디언즈) 활동지원비: 200,000원×20팀=4,000천원 행사대행비 30,000,000원=30,000천원 모집공고 및 행사소개 제작 발송비 4,000천원 행사물품 디자인 및 제작비 3,000천원 발대식 3,000,000원×1회=3,000천원 멘토링 워크숍 2,000,000원×3회=6,000천원 최종심사 5,000천원 해단식 3,000천원 상금지급 19,000천원 결과보고서 제작 8,000천원 참고자료 인쇄 및 자료수집비 등, 605천원		
			소 계	155	
			합 계		16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실제로 청년들의 선발이 8월 초에 이루어지고,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의 기간이 모집(7월 초)부터 최종심사 및 시상식(11월 말)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24년 인건비가 다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부위탁으로 수행되는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과물의 수준과 형식을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조세 및 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및 재정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이고,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홍보·행사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고유의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 재정교육 운영’ 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위탁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수행하는 구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반드시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서인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프로젝트 최종 결과보고서”의 수준과 형식에 있어 검토와 결과물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는 단순 경과보고 모음집 수준이다.

최종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3차례의 멘토링 및 피드백으로 구성된 경과를 단순 나열하고 있으나 멘토링 및 피드백을 받기 전과 후로 해당 사업을 구분하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형태로 결과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멘토링워크숍의 최종결과보고서는 팀별로 국가재정사업의 주제만 나타나 있을 뿐, 해당 사업의 부처, '22년~'23년 예산,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주요 정보와 대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수상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첨부되지 않아서 참가한 20팀의 보고서 작성 결과를 비교하거나 우수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교육행사 성격의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과물의 수준과 형식을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11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4억원(2.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 보훈기금 1,934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4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6,381	9,709	10,027	318	3.3
- 일반회계	6,227	9,573	9,851	278	2.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	61	67	6	9.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9	75	109	34	45.3
기 금	97,185	197,765	201,828	4,063	2.1
- 보훈기금	76,993	189,947	193,414	3,467	1.8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0,192	7,818	8,414	596	7.6
합 계	103,566	207,474	211,855	4,381	2.1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6조 3,94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62억원(3.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1,49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억원, 보훈기금 1,293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09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5,574,201	5,955,048	6,164,613	209,565	3.5
- 일반회계	5,560,831	5,937,247	6,149,039	211,792	3.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130	15,531	13,259	△2,272	△1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40	2,270	2,315	45	2.0
기 금	226,319	233,504	230,181	△3,323	△1.4
- 보훈기금	128,245	132,538	129,330	△3,208	△2.4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8,074	100,966	100,851	△115	△0.1
합 계	5,800,520	6,188,552	6,394,794	206,242	3.3

자료: 국가보훈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0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원 (3.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이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27	9,573	9,851	278	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	61	67	6	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9	75	109	34	45.3
합 계	6,381	9,709	10,027	318	3.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2,57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96억원(3.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2,41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억원이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649,680	6,029,898	6,241,690	211,792	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130	15,531	13,259	△2,272	△14.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40	2,270	2,315	45	2.0
합 계	5,663,050	6,047,699	6,257,264	209,565	3.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528억원으로 전년 계획안 대비 375억원(4.7%)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보훈기금 6,041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487억원이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증감	
	결산	계획(A)	계획안(B)	B-A	(B-A)/A
보훈기금	419,008	651,547	604,118	△47,429	△7.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3,010	138,762	148,730	9,968	7.2
합 계	672,018	790,309	752,848	△37,461	△4.7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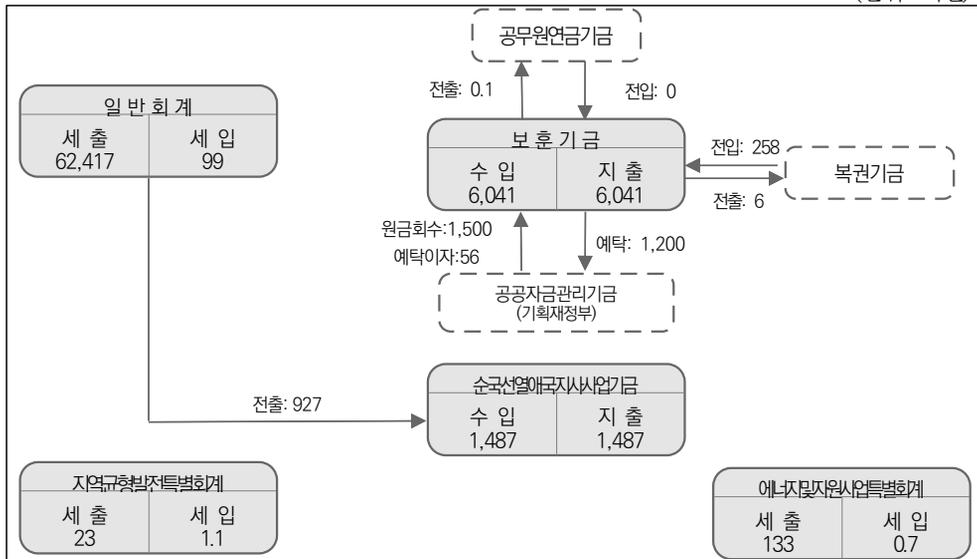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국가보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27억원이 전출된다.

보훈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00억원을 예탁하고, 1,556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258억원을 전입받는 한편, 6억원을 전출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 0.1억원을 전출한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마.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98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400만원(2.9%)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91,494	95,224	98,008	2,784	2.9
- 본부 인건비	33,637	34,838	36,190	1,352	3.9
- 지방보훈청 인건비	57,857	60,386	61,818	1,432	2.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가보훈부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가보훈부	1,415	1,439	24	1.7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2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0만원(5.3%)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6.4%)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8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만원(4.9%)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1,369	11,507	12,115	608	5.3
- 총액인건비 대상	3,160	3,122	3,322	200	6.4
- 총액인건비 비대상	8,209	8,385	8,793	408	4.9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상금·수당 예산이 증액되었고(2023년 4.8조원 → 2024년 5.0조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전문적인 심리재활을 위해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21억원), ③ 국가관리기념관 디지털전시관 조성 등 보훈문화 확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2023년 1,960억원 → 1,974억원), ④ 국립호국원 묘역확충, 연천현충원 및 강원·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등 보훈예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3년 997억원 → 1,046억원), 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단가 인상,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등 참전·제대군인 지원 및 선양사업이 확대되었다. (2023년 613억원 → 2022년 674억원)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은 모든 생존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내 제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대상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특성과 2023년도에 진행 중인 유사사업의 실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타 기관도 활용가능하도록 범용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주관 기념일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범용 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되었던 설계완료 시점이 2024년 7월로 늦추어졌고, 이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 또한 전액 이월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및 관련 경비 명목의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건립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2023년 내 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은 1차년도인 2023년도의 사업성과와 AI기반 디지털휴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행 중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보훈부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252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사업은 6·25전쟁 유엔참전국에 대한 보훈병원 및 의료장비 지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의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이고,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완공('23)에 따른 진료실 이전 및 증축을 통한 시설 재배치,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음압 격리실 확충, 수술실 확장 등 보훈의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은 월남전 파병 60주년을 계기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헌신에 대한 감사 표명을 위해 제복을 증정하는 사업이다.

보훈기금 사업 중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은 미성년 자녀 등 순직·전몰 군경 유가족에 대해 문화생활 지원 및 교류,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적인 심리치유와 재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¹⁾이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단위: 백만원)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80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478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21,889
보훈기금 (2개)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617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2,110
합 계		25,174

자료: 국가보훈부

1) 2023년 보훈기금 내 편성되었던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2023년 계획액 12억 6,200만원)이 본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기념관관리 운영, 국가유공자대부관리 등이 있다.

①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인원 증가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6·25자녀수당 사업은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대상인원의 증가,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의 추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증액되었으며, ③ 기념관관리운영 사업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보훈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관 조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보훈기금의 ④ 국가유공자대부관리 사업은 최근 금리인상 및 고금리의 지속적인 유지로 인하여 이차보전금 지급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1개)	보상금	3,325,248	3,468,124	142,876	4.3
	생활조정수당	55,899	82,529	26,630	47.6
	6·25자녀수당	328,809	403,289	74,480	22.7
	등록관리	5,005	6,732	1,727	34.5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343	3,223	880	37.6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350	1,130	780	222.9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8,354	11,354	3,000	35.9
	기념관관리운영	7,093	15,092	7,999	112.8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953	6,022	5,069	531.9
	국립산청호국원	2,779	9,334	6,555	235.9
	보훈정책개발	1,278	2,078	800	62.6
보훈기금 (5개)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1,659	3,294	1,635	98.6
	국가유공자대부관리	4,789	10,498	5,709	119.2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39	87	48	123.1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9	72	43	148.3
	제대군인대부관리	88	288	200	227.3

주: 총계 기준,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 사업 기준, 소액사업은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1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규모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¹⁾은 2024년 월남전파병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익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파병용사에게 제복을 증정하여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218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60주년계기)	-	-	21,889	21,889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은 월남참전유공자 17만 5,000여명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용역비로 구성되었다.

동 예산안은 2023년 1월말 생존 월남참전유공자 18만 63명에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생존률 97.3%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인 17만 5,114명에 대해 1인당 단가 12만 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4161-423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3년 현재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6·25참전용사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 분석의견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은 모든 생존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내 제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대상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특성과 2023년도에 진행 중인 유사사업의 실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2023년 현재 수행 중인 제복의 영웅들 사업과 사업 목적 및 대상이 유사하며 사업의 수행방식 또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3년 진행 중인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 예산안 현황]

구분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 (2024안)	제복의 영웅들 사업 (2023)
목적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사업내용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6·25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예산(안)액	218억 9,900만원	52억 5,500만원
1인당 단가	12만 5천원 ¹⁾	12만원
수행방식	직접수행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후 차수별로 제작·배송 수행(예정)	(좌동)

주: 1)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증정 제복 구성에 모자 추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제복의 영웅들 사업 예산은 6·25참전유공자 4만 3,794명을 제복 증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복의 제작·포장·배송을 포함한 1인당 단가는 12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제복이라는 증정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증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증정대상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지방보훈관서 및 6·25참전유공자 지회 등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신청접수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부터 차수를 구분하여 6·25참전유공자로부터 제복지급 신청²⁾(사이즈 선택 및 제복 배송지 고지 포함)을 받고 있으며, 각 차수별 신청에 근거하여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용역업체³⁾에 제복의 제작 및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도 제복의 영웅들 사업 진행 현황(2023.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023.4.10~4.29.	22,290	22,290	2,626
2차	2023.5.1~7.5.	6,192	6,192	764
3차	2023.7.6~10.31.	2,958	-	-
기타 (해외거주 등)	2023.8.10~10.31.	160	-	-
합 계		31,600	28,482	3,390

자료: 국가보훈부

2) <신청공고 및 신청방법>

(신청공고) ① 신청안내 공문 개별 발송, ②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 각종 SNS 공지, ③6·25참전 유공자회 단체에 신청 안내 협조 공문, ④리플릿 제작·배포(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6·25참전유공자 241개 지회)

(신청방법) ①전화 신청(업체 콜센터, 국가보훈부), ②이메일 및 팩스 신청, ③6·25참전유공자 지회를 통해 접수

자료: 국가보훈부

3) 계약상대방인 용역업체(2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는 6.25참전유공자 제복(자켓, 바지, 넥타이) 제작 및 사업 관리 전반(전담 콜센터 운영, 포장 및 배송, A/S등 사후관리)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3년 8월말 현재 3차 신청을 접수 증인데, 8월말 기준으로 증정 대상 총 인원 4만 3,794명 중 3만 1,600명(72.5%)이 신청한 상황이다. 2개월간의 2차 신청기간에 6,192명이 신청하였으나 3차 신청기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2,958명이 신청한 것을 볼 때 잔여 기간 동안 신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실적은 사업목표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의 특성상 사업기간 동안 사망하는 등의 사유 외에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제복 증정 사업은 매 차수별 제작·배송의뢰가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단가계약의 특성상 단가계약 자체에 근거하여 사업예산 잔액을 사고이월할 수 없다.

월남참전유공자⁴⁾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에 비해 사업기간 동안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나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⁵⁾일 것으로 보이고 제복의 영웅들 사업과 같이 실제 수요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 참전유공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 전원을 기준으로 계상된 예산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정부는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

5)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월남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7세이다.

가. 현 황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¹⁾은 통합보훈시스템 등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행정효율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4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유지관리,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정보보호·보안시스템 도입·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 및 상용S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5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보훈부 정보화	4,720	4,864	4,672	△192	△3.9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2,089	2,218	2,218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337	343	589	246	71.7
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 확산	131	294	-	△294	△100.0
정보보호/보안시스템 도입·운영	304	580	373	△207	△35.7
윈도우10 라이선스	94	120	105	△15	△12.5
정보화기기 및 S/W보급	336	458	480	22	4.8
공무원 정보화 교육	42	42	42	-	-
소속기관 네트워크 환경 개선	224	200	147	△53	△26.5
보훈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991	100	100	-	-
본부 네트워크 환경 개선	-	340	72	△268	△78.8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	169	-	△169	△100.0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	-	546	546	순증
2007~2010 버전 한글 S/W 업그레이드	75	-	-	-	-
업무용 노트북 구매	97	-	-	-	-

자료: 국가보훈부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7169-501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다²⁾. 본 사업은 현재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기념행사 등의 참석신청 접수, 초청대상 선정 및 초청장 발송, 초청대상자의 행사 입장 등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가 내부업무시스템, 웹사이트, 오프라인 수작업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 전자초청장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타 기관도 활용가능하도록 범용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해 정부 주관 기념일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범용 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을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기념식에 전자초청장 도입 등을 기능으로 하는 기념식관리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입장 편의성, 관리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기관도 활용 가능하도록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행정효율성에 기여하는 것 또한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사전단계에서 타 기관 주관행사를 포함한 주요 기념일을 조사·분석하고 타 기관이 주관하는 정부기념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2) 국가보훈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념일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해당 기념일 관련 정부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1항 관련 각종 기념일 12개
 : 2·28민주운동 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순국선열의 날 등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 2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 기념식에 전자초청장 도입 등을 기능으로 하는 정부 기념식관리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입장 편의성, 관리의 효과성 등 제고 ◦ 다른 기관도 활용 가능하도록 정부 기념식 관리를 위한 범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행정효율성에 기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주요 기념일을 조사·분석하여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념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중 타 기관 주관행사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관리 절차, 시스템 역할, 시스템 확산 방안 등 도출 ◦ (대상자 선정) 관련 시스템과 연계한 대상자 취합 및 선정, 명단 생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업무시스템과 외부 웹사이트 연계, 별도 명단 업로드 등 대상자 취합 - 전자 및 우편 발송, 내부 관리 등 용도별 명단 도출 ◦ (초청장 발송) 초청장 구성 및 발송 기능 ◦ (입장 관리) 현장에서 초청장, 본인확인 후 행사장 입장 ◦ (자료관리) 행사 별 주요 사항, 초청자 명단, 생산된 콘텐츠 소요 경비 등 이력 관리 및 통계 추출기능 ◦ (시범 운영) 국가보훈부 주관행사 1개 행사 진행 지원 및 보완 ◦ (시스템 확산) 다른 기관 정부 기념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재정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 부처의 다양한 정부기념식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용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용이 가능한 기념행사 관리 시스템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법령 소관부처이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³⁾에 따라 ‘정부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8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2. (생략)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을 업무 소관으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사업주관 부처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념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⁴⁾에 따른 국경일, 그 외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고 법률상 국가기념일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동 규정의 별표에서 규정한 부처가 주관하고 있다. 참고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⁵⁾.

이와 같이 기념행사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기념일이 다양한 부처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는 점, 행정안전부가 '기념일 제도 운영'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권한이 없는 국가보훈부가 다수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과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사업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기념일 제도 운영 업무의 소관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 4. (생략)
 -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 6.~10. (생략)

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1절: 3월 1일
- 2. 제헌절: 7월 17일
- 3. 광복절: 8월 15일
- 4. 개천절: 10월 3일
- 5. 한글날: 10월 9일

5) 국가보훈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의 기념일 중 가장 많은 기념일(단독 12개, 공동 1개)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과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5월 29일)을 주관하고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의 기념일은 7개이고, 3·1절 등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4개와 국민안전의 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 10개를 주관하고 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식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경축식 등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행사의 효율적 운영 및 초청명단 관리의 체계화 등을 위해 '초청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모바일 초청장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동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정부기념일 행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가. 현황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¹⁾은 가정에서 개호(介護)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보훈요양원 건립	495	6,839	7,069	230	3.4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495	2,339	6,722	4,383	187.4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	4,500	347	△4,153	△92.3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100병상 규모의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2022년~2025년)과 200병상 규모의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2023년~2026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총사업비는 232억 6,400만원과 427억 4,700만원이다. 두 사업 모두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예산안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목적의 예산이며,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보훈기금 2161-443

[2024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	-	4,934	743	1,045	6,722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	36	-	156	155	347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되었던 설계완료 시점이 2024년 7월로 늦추어졌고, 이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 또한 전액 이월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및 관련 경비 명목의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2022년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부와의 이견 조정,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제시규모에 대한 국가보훈부 및 한국보훈의료공단의 사업계획 재검토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같은 해 설계용역에 착수하지 못하고 설계비 전액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다.

[2022년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설계비	487	-	487	-	487	-	-
공사비	-	-	-	-	-	-	-
감리비	-	-	-	-	-	-	-
시설부대비	8	-	8	5	3	-	66
합 계	495	-	495	5	490	-	1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3년도 1월 총사업비 확정 이후에도 국가보훈부는 확정된 총사업비에 설계비의 적정 소요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설계공모 및 용역계약자 선정 등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은 2023년 8월 말에서야 체결되었으며 2024년 7월까지 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편성된 설계비의 집행완료 시점 또한 2024년 7월로 늦추어진 상황이다.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¹⁾	연차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총사업비 ¹⁾		23,068	495	2,339	6,722	13,512
공사비		18,447	-	2,000	4,934	11,513
설계비	공모비	-	-	-	-	-
	용역비	811	487	324	-	-
감리비	용역비	2,159	-	-	648	1,511
	맞춤수수료	232	-	-	95	137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46	8	15	23	-
	위탁수수료	351	-	-	-	351
시설장비설치비		1,022	-	-	1,022	-

주: 1) 2023년 9월 22일 설계비 추가소요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232억 6,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본공사 또한 늦추어져 2023년 편성된 공사비(20억원)는 전액 2024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설계용역이 종료되는 2024년 7월 이후에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설계도서 보완 등을 위한 기간소요로 인해 본공사의 착공이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본공사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당초 및 변경(예상) 일정]

구 분	당초 계획(2022년도)	변경 일정
설 계	2022. 11. 1. ~ 2023. 9. 30.	2023. 8. 30. ~ 2024. 7. 24.
공 사	2023. 12. 1. ~ 2025. 3. 30.	2024. 12. 1. ~ 2026. 3. 30.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3년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실적행(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년 예산안
	교부(예정)액 ¹⁾	전년도이월액	교부총액	집행(예정)액	이월(예상)액	
설계비	324	487	811	570	241	-
공사비	2,000	-	2,000	-	2,000	4,934
감리비	-	-	-	-	-	743
시설부대비	15	3	18	12	6	1,045
합 계	2339	490	2,829	582	2,247	6,722

주: 1) 2023년 교부 내역

· 3차 교부: 3억 2,400백만원 (2023. 8. 24.)

· 4차 교부: 20억 1,500만원 (2023. 12월 예정)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같이 사업의 전체 일정이 1년 가량 순연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12월부터 집행예정이었던 1차년도(2023년도) 공사비가 2024년 12월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와 관련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건립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2023년 내 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2023년 내 토지보상을 마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 보상비 23억 7,200만원과 설계비 2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8월말 현재 건립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3	2024	2025	2026
총사업비		42,747	4,500	347	6,491	31,409
보 상 비		2,372	2,372	-	-	-
공 사 비		32,690	-	-	5,685	27,005
설계비	공모비	100	100	-	-	-
	용역비	2,020	1,984	36	-	-
감리비	용역비	2,347	-	156	438	1,753
	맞춤수수료	408	-	-	168	240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255	44	15	60	136
	위탁수수료	585	-	140	140	305
시설장비설치비		1,970	-	-	-	1,970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는 2023년도 5월 충청북도로부터 영동군 내 6개 후보지를 추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해당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8월 현재 '충북권 보훈요양원 부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 완료 후 11월 내 건립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편성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보상비 및 설계비)를 건립대상지를 확정하는 대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3년도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실집행(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안
	교부(예정)액	전년도이월액	집행(예정)액	
보상비	2,372	-	미정	-
설계비	2,084	-	미정	36
공사비	-	-	-	-
감리비	-	-	-	156
시설부대비	44	-	미정	155
합계	4,456	-	미정	347

주: 1) 2023년 교부 내역: 45억원 (연내 교부 예정)

2) 2023년 집행(예정)액 : 미정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건립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중반부터 2024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려던 당초 계획이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말까지로 늦추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초에 시작할 계획이었던 공사 또한 2026년 초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비 잔액과 설계용역 감리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3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실집행(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예산안]

구분	당초 계획 (2023년 1월)	변경 일정
보상	2023년 초	2023년 말
설계	2023년 중 ~ 2024년 말	2024년 중 ~ 2025년 말
공사	2025년 초 ~ 2026년 말	2026년 초 ~ 2027년 말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 사업부지 선정 후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나 연내 건립대상지의 결정 여부와 매입토지의 규모 및 법령상 규제, 필지 수, 민간소유 토지의 규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부지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과 보훈복지시설이 부재한 충북권에 요양원을 건립하여

전국 보훈대상자에게 균형적 요양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보훈부는 사업부지 선정을 조속히 마치고 부지매입 진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보훈대상 및 요양원 현황('23.7. 기준)]

(단위: 명)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89,845)		영남권(226,323)		호남권(89,713)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보훈대상	375,497	38,326	26,540	63,305	94,653	131,670	31,010	58,703	11,974
요양원 (정원)	수원/남양주 (222/206)	원주 (200)	-	대전 (200)	대구 (200)	김해 (200)	전주 (200)	광주 (200)	-

자료: 국가보훈부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의 1차년도 사업성과와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¹⁾은 보훈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인물에 대해 예우하고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1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증액사유는 보훈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보훈문화제 개최 소요 증가로 인한 1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및지원	214	8,354	11,354	3,000	35.9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에는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내 역사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0억원이 편성되었다.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보훈과 관련한 역사적 위인을 디지털 3D 형태의 가상인물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보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²⁾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3145-404

2) 2023년도 예산에는 현충시설관리 세부사업(3146-406)에 30억원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은 1차년도인 2023년도의 사업성과와 AI기반 디지털휴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행 중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9월 현재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을 통해 3명의 독립운동가(김구, 안중근, 윤봉길)를 대중과 상호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가상인물(이하 “AI 디지털휴먼”)로 구축 중으로, 구축 완료 후에는 각각의 인물을 기념하는 국가관리기념관³⁾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향후 교육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에 전시를 전제로 반영된 5명의 AI 디지털휴먼은 그 구축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시장소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2023년도 구축대상 AI 디지털휴먼은 예산안 편성 시부터 구축대상 인물과 기념관 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2024년 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AI 디지털 휴먼 구현	데이터 수집 및 가공	1,540	5인 x 308백만원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디지털 휴먼 형상(3D) 제작		
AI 디지털 휴먼 기반 영상제작 및 행사 지원	디지털 휴먼 활용 영상 제작 및 기념행사 지원	560	
	전시영상 제작		
실감형 전시	전시기획 및 설계	420	
	전시장비 구매 및 설치		
통합운영 플랫폼 유지보수	통합운영 플랫폼 기능개선 및 추가	280	
기 타	서버증설 비용 등 부대비용	200	
합 계		3,000	

자료: 국가보훈부

3) 백범 김구 기념관(서울 용산구), 안중근의사 기념관(서울 중구), 윤봉길의사 기념관(서울 서초구)

[2023년도 보훈인물 시 기반 디지털 휴먼 제작사업 전시계획]

구 분		주요 구성	면 적(㎡)	비고
백범김구기념관(1층)		• AI 포디움 (LED 미디어 월)	10.77평(35.6㎡)	기념관별 전시실 3곳 AI 휴먼 도슨트
		• 대화형 AI 디지털휴먼	키오스크 1식	
안중근의사 기념관	지상2층	• AI 포디움 (LED 미디어 월)	10.83평(35.8㎡)	
	지하1층	• 대화형 AI 디지털휴먼	키오스크 1식	
매헌윤봉길 의사기념관	제2전시실	• AI 포디움 (LED 미디어 월)	10.83평(35.8㎡)	
	중앙홀	• 대화형 AI 디지털휴먼	키오스크 1식	

자료: 국가보훈부

2023년 9월 현재, 국가보훈부는 현재 보훈인물을 가상화한 AI 디지털휴먼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AI 디지털휴먼의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AI 디지털휴먼 관련 자산(AI모델, 데이터 등) 통합 플랫폼 활용방안 마련,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부처·지자체·민간 지원 등 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⁴⁾.

[보훈인물 시 기반 디지털휴먼 활용방안 연구관련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요약]

<p>1. 사업명 : 보훈인물 시 기반 디지털휴먼 활용방안 연구</p> <p>2.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관련 자산(AI모델, 시각화 자산, 데이터 등)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및 고도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향후 개발된 AI 디지털 휴먼이 일상 속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홍보 등 중장기적 활용방안 마련 <p>3. 과업내용</p> <p>가. 환경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구조변화, 미디어트렌드 변화 등 보훈문화확산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진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진단을 토대로, 보훈인물 시디지털 휴먼 활용 환경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에서 개발된 시디지털 휴먼에 대한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 국내/국외, 공공/민간 등 다양한 분야, 성공/실패 사례 등 종합 고려한 사례 검토·분석
--

4) 해당 연구용역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나. 보훈인물 시디지털휴먼 활용방안

○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관련 자산(AI모델, 시각화 자산, 데이터 등)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및 고도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국내외 사례분석 기반한 보훈인물 시디지털휴먼 활용방안 마련

- 공공/민간분야 성공사례 벤치마킹하여 시디지털휴먼 활용한 온·오프라인 보훈문화 확산 방안 제시

다. 중장기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성과지표 제시 / 사업효과성 제고 위한 중장기 사업운영 방안 제시

자료: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국가보훈부(2023.9.)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구축 중인 보훈인물 3명의 AI 디지털휴먼은 예산안 편성 시부터 구축대상 인물과 전시공간 등 구체적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명의 AI 디지털휴먼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현재 AI 디지털휴먼과 통합 플랫폼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이 가공의 인물이 아닌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실제 인물을 가상화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차년도 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인물 관련 기념사업회, 유족회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1차년도 성과물인 AI 디지털휴먼의 전시 성과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활용전략을 바탕으로 AI 디지털휴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8억 9,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00만원(8.4%)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79	823	892	69	8.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115억 9,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6억 3,400만원(17.5%)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8,484	94,958	111,592	16,634	17.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488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900만원(2.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45,008	47,828	48,817	989	2.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민권익위원회	592	588	△4	△0.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78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원(5.5%)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원(3.1%)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6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7.2%)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7,027	7,437	7,847	410	5.5
총액인건비 대상	2,796	3,064	3,160	96	3.1
총액인건비 비대상	4,231	4,373	4,687	314	7.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보 및 민간협력 예산이 감액되었고(2023년 27억원 → 2024년 22.5억원), ②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3년 3.7억원 → 2024년 168.9억원), ③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2023년 23억원 → 2024년 27.4억원), ④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과정 확대 등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증액되었다(2023년 1.6억원 → 2024년 3.0억원).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반영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안은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관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 분야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법」 개정 및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참여 동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정보시스템운영, 반부패기술지원(ODA),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등이 있다.

①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은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및 제도를 전수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 지방의회를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확대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개)	행정정보시스템운영	5,433	22,372	16,939	311.8
	반부패기술지원(ODA)	160	298	138	86.3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44	3,066	422	16.0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854	991	137	16.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

특별행정심판기관 참여 추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9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된 증액사유는 온라인행정심판 운영 내역사업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내내역사업의 1차년도 예산 168억 8,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정보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584	5,433	22,372	16,939	311.8
· 권익행정시스템운영	3,487	3,019	3,137	118	3.9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1,389	1,627	18,501	16,874	1,037.1
· 사이버안전센터운영	559	567	567	-	-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운영	104	115	97	△18	△15.7
· 청렴연수원 정보화운영	45	105	70	△35	△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았던 행정심판기관들을 포함하여 총 119개 행정심판기관의 행정심판업무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는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2-320

구현되지 않았던 참가인의 심판절차 참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재결서 송부, 원격영상 구술심리 기능, 재결례 검색기능 강화 및 맞춤형 청구서 작성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간 총 20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과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비교]

구분	온라인행정심판(기존) (2023.8월말 기준)		원스톱행정심판(신규)	
행정심판 창구일원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일반 소청 </div> 일반, 소청 등 81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일반 소청 + 조세 보상보험 기타 </div> 일반, 소청, 조세, 보상보험, 국도 등 119개	
행정심판 서비스 강화	청구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본안 신청 </div>	청구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본안 신청 + 개별기능 </div> * 개별기능 : 통합되는 기관의 고유제도
	당사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청구인 피청구인 </div>	당사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청구인 피청구인 + 참가인 </div>
	진행상태	청구→접수→조사→심리재결	진행상태	(좌동)
	재결서확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면 홈페이지 </div>	재결서확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면 홈페이지 + 전자우편등 </div>
	비대면	-	비대면	원격영상 구술심리
	대리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청구인 </div>	대리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청구인 + 참가인 피청구인 </div>
행정심판 분류체계 표준화	*범정부적 행정심판 관련 표준 분류체계가 없어 나의 처분과 유사한 재결례를 찾는 어려움이 있음		* 범정부적 행정심판 표준분류체계 도입 - 대·중·소 기반의 3단계 분류체계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쉽게 유사 재결례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	
국민의 알권리 강화	연간 10% 이하 공개		* 사건유형별 공개건수 확대 - 모든 유형별로 재결례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기관 및 공개건수 확대 - 행정심판 위원회별 통계분석 정보	
청구서 작성지원 강화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을 서식 또는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청구서 직접 작성에 한계가 있음.		* 맞춤형 질의·응답식 청구서 작성 지원 - 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질의·응답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 - 유사 샘플을 제공하여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이행계획	소요예산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스마트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는 절차적 권리보장 전자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일반조세·소청·의료 등 분야별 특수 기능 구현 · 청구서·답변서·재결서 등 전자문서 통합 저장시스템 구축 - 그린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피청구인⇔위원회 간 전자송달체계 구현 · 종이 없는 행정심판 - 국민의 알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례 정보공개 확대 및 맞춤형 사례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자동화 및 공개관리시스템 구축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개별시스템 데이터 이관 · 개인정보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등 	16,885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기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지원 및 원격영상심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세·보상보험·소청 등 통합데이터 정보 분석 및 선순환 체계 구축 	2,484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행정심판 자동화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답변서·검토의견서 등 생성형(GPT) 보고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 	1,516
합 계		20,88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일반행정심판위원회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속하는 소청심사위원회 46개, 그 외 특별행정심판기관 20개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행정심판위원회 49개, 소청심사위원회 31개, 기타 특별행정심판기관 3개 등 총 83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 중이며, 나머지 42개 기관은 별도의 업무용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기 등 별도의 방법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로 구축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과 관련하여, 총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언어적 특성²⁾과 1심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적 특성³⁾을 고려하여 4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시스템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9개 기관에 대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대상 행정심판기관]

일반행정심판(57)			특별행정심판(62)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법령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법령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지위법
2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법	2-18	17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법	19-29	11개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4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법	30-35	6개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지방공무원법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6-9	법무부 소속 4개 지법고정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행정심판법	37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10-15	대검찰청 소속 6개 고등검찰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행정심판법	38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16-32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39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33-49	17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40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50	국회사무처	행정심판법	41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51	감사원	행정심판법	42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52	국가정보원	행정심판법	43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53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법	44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54	국기안보실	행정심판법	45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법
55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법	46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56	법원행정처	행정심판법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법			

주: 2023년 9월말 기준,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2개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에 추가적으로 참여
 자료: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BPR/ISP/ISMP」. 국민권익위원회 (2023.8.31.)

- 2) 난민위원회
- 3) 특허심판, 해양안전심판, 공정위 이의신청

나. 분석의견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관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 분야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심판법」 개정 및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참여 등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2023년 9월말 현재, 시스템 통합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4개 특별행정심판기관⁴⁾을 제외한 119개 행정심판기관 중 일반행정심판위원회 49개와 소청심사위원회 31개, 그 외 특별행정심판기관 3개 등 총 83개 행정심판기관에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확인,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일반행정심판위원회 56개 중 8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46개 중 15개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외 특별행정심판기관 16개 중에서는 13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미통합 기관 현황(2023.9월말 현재)]

구분	미통합 행정심판위원회 현황(총 36개) ¹⁾
일반 (8개)	대통령소속(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감사원,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특별 (28개)	(소청심사위원회 15개) 중앙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소청(4개), 국회 소청, 현재 소청, 법원 소청, 선관위 소청, 중앙군인사 소청, 육군·공군·해군·군무원 소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기타 특별행정심판기관 13개)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주: 1) 난민위원회,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공정위(이의신청) 등 4개 행정심판기관 제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난민위원회,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연구용역⁵⁾의 결과보고서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심판원을 두고 해당 행정심판원의 산하에 일반·소청·조세 등 각각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취지]

- (개정안 취지)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처분별로 상이한 권리구제 절차로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된 통합행정심판 기관 운영으로 재결 공정성을 제고
 - * 개별법에 정한 특례를 따르는 행정심판(예: 조세심판, 소청심사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상기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2023년 9월말 현재까지 119개 행정심판기관 중 83개 기관만이 시스템 통합에 참여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참여 행정심판기관들의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독자적인 개별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시스템 통합에 참여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9월말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 중인 기관들로부터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에의 통합 관련 동의를 받았으며, 미동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내에 현재 다수의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에 참여 중인 일반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관련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며, 조세·의료·노동·보상보험 등 분야별 특별행정심판 관련 기능 또한 2024년 내에 구축하고 해당 기관들의 행정심판 관련 데이터를 이관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분야 행정심판기관(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및 노동분야 행정심판기관(중앙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토지분야 특별행정심판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2023년 9월말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특별

5)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기관 통합방안 연구」(2022.12.30.)

행정심판기관 전부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관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전에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유로 신규 통합시스템 이용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분야별 특수기능을 구축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대상 특별행정심판기관(소청심사위 제외) 현황]

연번	분야	기관명	설치근거법령
1	조세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2		국세심사위	국세기본법
3		관세심사위	관세법
4	보상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국민건강보험법
5		장기요양심판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국민연금재심사위	국민연금법
8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	공무원재해보상법
9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사위	군인재해보상법
10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어선재해보상보험법
11	노동	중앙노동위	노동위원회법
12		고용보험심사위	고용보험법
13	토지	중앙토지수용위	토지보상법
14	기타	지리적표시심판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5		광업조정위	광업법
16		품종보호심판위	식물신품종보호법

주: 음영표시된 위원회는 2023년 8월말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미사용 위원회

자료: 행정심판 업무재설계 정보전략(BPR/ISP) 결과보고서(2023.8.31.)을 활용하여 제작됨

또한, 분야별 특수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관련 기관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정보화전략계획⁶⁾은 동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⁷⁾

6) 행정심판 업무재설계 정보전략(BPR/ISP) 용역(2023년 5월~8월)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의 경우 토지행정 전문가의 참여 하에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해당 기관의 참여와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토지·개발부담금 등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심판 기능 구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세분야(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 및 노동분야 특별행정심판(중앙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경우도 2024년 내 시스템 통합에 관하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시스템 설계에 참여가 어려워 해당 분야에 대한 특수기능 구현은 어려울 수 있다⁸⁾.

이와 같이 현재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관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 조세·보상보험·국토·노동분야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행정심판법」 개정 및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참여 동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8) 보상보험 분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수립한 정보전략은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참여 중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보상보험분야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동 기능의 구축이 완료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와 같은 보상보험 분야 내 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신규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개요

1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50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5억원(6.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502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673,668	421,696	450,162	28,466	6.8
- 일반회계	673,668	421,696	450,162	28,466	6.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58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억원(0.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585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154,841	159,603	158,479	△1,124	△0.7
- 일반회계	154,841	159,603	158,479	△1,124	△0.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53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300만원(3.5%)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50,287	51,817	53,650	1,833	3.5
본부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50,287	51,817	53,650	1,833	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공정거래위원회	653	653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89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3.9%) 감소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1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1.8%)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00만원(8.5%) 감소하였다.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9,290	9,291	8,921	△370	△3.9
총액인건비 대상	3,953	4,101	4,174	73	1.8
총액인건비 비대상	5,337	5,190	4,747	△443	△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공정거래 사건 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②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시스템 기능개선(5억 4,400만원)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예산(3억 3,400만원) 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③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 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구축 예산 19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고 규율대상이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연동제 시행과 관련한 각 사업의 공동 또는 연계시행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연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법령에 규정한 업무와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은 출연금 편성을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과 지출예산에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자체수입과 그와 관련된 지출예산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출연금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시 반영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지원,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사업이 있다.

① 공정거래지원 사업은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②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기안착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은 기업의 자율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위해정보 통합 처리 플랫폼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개)	공정거래지원	819	1,389	570	69.6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1,479	2,326	847	57.3
	한국소비자원 출연	50,853	52,842	1,989	3.9

주: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과의 공동·연계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필요

가. 현 황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¹⁾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시책을 추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23억 2,600만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1,434	1,479	2,326	847	57.3
하도급분야 거래행태개선	1,365	1,317	1,652	335	25.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9	62	574	512	825.8
공시위탁운영	-	100	10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은 하도급분야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 직권조사 등을 수행하는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내역사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의 이행평가,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내역사업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공시위탁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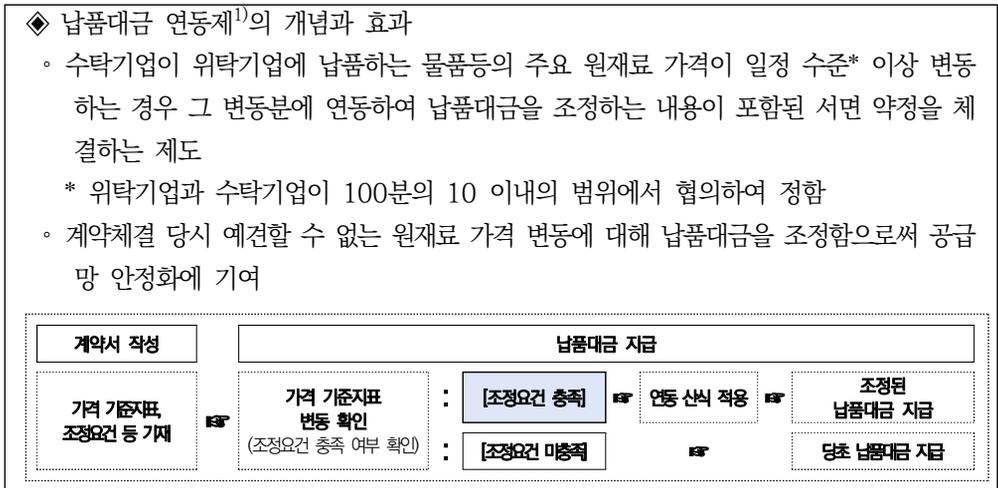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331-400

2024년도 하도급분야 거래형태 개선 내역사업에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내내역사업 3억 3,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신설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수탁·위탁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²⁾로서, 각각의 신설 제도는 2023년 10월 4일 동시에 시행되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주: 1)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를 ‘납품대금 연동제’로 통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2023.2.9.)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은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원사업자(위탁기업)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수탁·위탁)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한 「상생협력법」 또한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한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한 없이 모든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의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6유형)을 업으로 하는 위탁기업이 위탁하는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업무(5유형)를 대상으로 총 30유형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하도급거래의 경우 제조·판매·수리·건설업자의 제조위탁(4가지), 수리업자의 수리위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용역업자의 용역위탁 등 총 7가지 거래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생협력법」의 적용 영역이 「하도급법」의 적용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두 법률상 적용영역의 개념이 중첩됨에 따라 「상생협력법」³⁾은 위탁기업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있어서 해당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3) 「상생협력법」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수·위탁거래)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비교]

▶ (적용대상)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한없이 모든 수탁 위탁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한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 위탁기업의 매출액(규모)에 따른 제한 없음	◆ 위탁기업의 매출액(규모)에 따른 제한 있음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13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 대급지급에 한정(하도급법 §13①)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 2조원 초과 중견 → 8백억 미만 ~ 3천억원 미만 중견 * 대급지급에 한정(하도급법 §13①)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1.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2.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 제조·수리위탁(30억원 미만), 건설위탁(45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 (거래관계) 상생협력법은 위탁대상과 위탁기업의 거래관계가 30가지 가능하나 하도급법은 7가지로 제한적임

* (예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공장건설 위탁을 할 경우 둘 다 수·위탁거래에 해당되나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음

수위탁거래(6×5=30개의 거래형태)	하도급거래(4+3=7개의 거래형태)
▶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6) → (위탁내용)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5)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건설④) → 제조 / 수리 → 수리⑤ / 건설 → 건설⑥ / 용역 → 용역⑦

▶ 하도급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위탁거래는 제한이 없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가 엔진제작 위탁을 할 경우, 수·위탁 또는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나, 자동차 제조업자가 작업복 제조위탁을 할 경우, 수·위탁거래는 해당되나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음.

▶ 수 위탁거래는 모든 하도급거래를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의안번호 제2115057호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2022.11.)

나. 분석의견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고 규율대상이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연동제 시행과 관련한 각 사업의 공동 또는 연계시행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제도 홍보 및 실시 관련 물가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⁴⁾.

두 기관 모두 연동제와 관련한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연동확산 지원본부⁵⁾(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연동 우수기업 사례 발표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비용 등을 예산안에 계상하였다.

[2024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공정거래위원회) 및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안 현황]

구 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예산안		22억 7,000만원	3억 3,400만원
사업 내역	기업 대상 교육 및 법률자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 및 분쟁 발생시 법률자문 비용 지원 (2억원) 	-
	원가분석 지원 및 연동약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기업 원가분석 지원 및 연동약정 컨설팅(원가분석 전문기관) (7억원) 	-

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일반회계, 4231-301) 세부 사업에 연동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5)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7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연동지원본부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구 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연동지원 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1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제 실적 점검 및 물가지수 개발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상담·교육 및 컨설팅 (2억 2,400만원)
	연동우수 기업 지정 및 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 우수기업 사례 발표 연동우수기업 선정 관련 비용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2억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 우수기업 사례 발표 이해관계자 간담회 연동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1억 1,000만원)
	제도개선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보완 주요 쟁점 검토 등 연구 (6,0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한 바와 같이 두 제도는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각 소관기관이 정해져 있으나,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각 사업 주체는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사업의 공동·연계 수행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업에 따른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의미하는 하도급거래인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은 하도급거래를 포함한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행정기관이 홍보·컨설팅 등 연동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위탁 기업 간 하도급대금 연동을 명시한 계약서 교부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연동제의 실질적 법 집행은 각각의 소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개발·제공’과 같은 정보제공 사업의 경우 각각의 수행주체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가공·제공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수행주체를 통일하거나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식을 연계·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홍보의 경우 또한, 두 기관이 각각 연동제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국민 이해도 제고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유사한 두 제도를 공동으로 홍보하되 법 집행에 있어 차이점 등에 대해 알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사업의 내역별 공동 또는 연계시행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업무의 경우 수행주체를 통일하거나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식을 연계·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도급법」은 ‘연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법령에 규정한 업무와 차이가 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및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법령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하도급법」 제3조의7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7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6) 실제 정부는 2022년 자율추진 형태의 대금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연동계약서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도 관련 공동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한 바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7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7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그런데 본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연동지원본부의 예산으로 연동제 실적 점검 및 물가지수 개발,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상담·교육 및 컨설팅 관련 사업 소요액만을 계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홍보와 관련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법령과 예산안과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은 사업 초기로서 하도급법령상 연동지원본부가 홍보를 담당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조기안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 초기 정부가 직접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관련 규정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위탁에 의해 연동지원본부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고, 연동지원본부가 그 고유사업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도록⁷⁾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지정되는 연동지원본부가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의 자체수입 및 관련 지출 누락분 계상 필요

가. 현황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¹⁾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기관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 8,900만원이 증액된 52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소비자원 출연	50,341	50,853	52,842	1,989	3.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지차보전 대상기관으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에 계상된 금액은 2024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지출예산안 계상액에서 자체수입예산안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분석의견

한국소비자원은 출연금 편성을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과 지출예산에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자체수입과 그와 관련된 지출예산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출연금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시 반영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461-630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안 편성 시부터 지방지원 사무실 및 사택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금과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출연금 편성을 위한 자체수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입을 동 기관의 경기강원지원 건물 매입 관련 차입원금²⁾ 상환, 임차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동 지출 또한 출연금 편성 관련 지출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0~2022년도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수입) 및 관련 지출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¹⁾			지출 ²⁾		
	예산	결산	결산 내역	예산	결산	결산 내역
2020	1,618	1,564	혁신도시 사택 임차보증금 반환 등 7건	1,618	1,634	본원 및 지방지원 사택 매입 대금 13억 7900만원 본원 및 지방지원 사택 임차 등 2억 5,500만원
2021	3,369	3,177	경기지원 매입 관련 차입금 30억원 경기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1억 7,700만원	3,369	3,180	경기지원 매입 30억 8,200만원 지방지원 사택 임차보증금 등 9,800만원
2022	2,861	1,629	인천지원 임차보증금 반환 등	2,861	2,022	경기지원 차입원금 상환 20억원 지방지원 사무실 및 사택 임차보증금 등 2,200만원

주: 1) 임차보증금 반환금, 부동산 매각 수익, 부동산 매입 관련 차입금

2) 임차보증금 발생분, 부동산 매입 소요액, 부동산 매입관련 차입원금 상환액, 기타 부동산 거래 수반 제비용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편,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의 확정예산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근무자용 사택 기준」(국토교통부) 및 자체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 추진 중인 사택의 매각대금 및 기타 지방지원 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등 15억 5,800만원이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사택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2021년에 매입한 경기지원 매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지출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2) 경기강원지원은 2021년에 매입하였으며 매입관련 차입금(30억 8,200만원)은 같은 해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에 수입으로 전액 반영되어 있다.

[2023년도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수입) 및 관련 지출예산 편성 현황]

수 입 ¹⁾	지 출 ²⁾
15억 5,800만원	15억 5,800만원
사택매각대금 15억 1,600만원 임차보증금 4,200만원	경기지원 매입관련 차입원금 상환 10억원 임차보증금 5,600만원 기타 법인세 등 부동산 매각에 따른 제비용 5억 200만원

주: 1) 임차보증금 반환금, 부동산 매각 수익, 부동산 매입 관련 차입금

2) 임차보증금 발생분, 부동산 매입 소요액, 부동산 매입관련 차입원금 상환액, 기타 부동산 거래 수반 제비용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수지차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의 예산편성 시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사택 매각 수입 등은 자체수입으로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지차 보전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지출 또한 지출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예산안 편성 초기단계에서는 차년도 수입 실현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과도한 수입 결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사택의 축소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임대차계약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라 매년 변동 폭이 커 출연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예산상의 자체 수입으로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지차보전 예산안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여 정부의 수지차보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¹⁾.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조 3,70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조 6,799억원(62.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9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4조 2,810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316,551	72,325	89,629	17,304	23.9
- 일반회계	316,551	72,325	89,629	17,304	23.9
기 금	2,403,233	2,618,351	4,280,987	1,662,636	63.5
- 공적자금상환기금	2,403,233	2,618,351	4,280,987	1,662,636	63.5
합 계	2,719,784	2,690,676	4,370,616	1,679,940	62.4

주: 1. 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64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04억원(28.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64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억원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참고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나, 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5개 기금(동 보고서 p.93 참조)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수입·총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4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1,551,816	1,603,619	2,064,032	460,413	28.7
- 일반회계	1,551,816	1,603,619	2,064,032	460,413	28.7
기 금	81	80	128	48	60.0
- 공적자금상환기금	81	80	128	48	60.0
합 계	1,551,897	1,603,699	2,064,160	460,461	28.7

주: 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나. 세입·세출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89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3억원(23.9%) 증가하였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16,551	72,325	89,629	17,304	23.9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004억원(21.3%) 증가하였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151,816	3,763,619	4,564,032	800,413	21.3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다. 기금운용계획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조 9,781억원으로 전년 계획안 대비 752억원(0.2%)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10조 8,893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41억원, 신용보증기금 11조 4,703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조 162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조 8,972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조 6,410억원이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공적자금 상환기금	7,107,748	11,019,312	10,889,253	△130,059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3,260	54,153	64,109	9,956	18.4
신용보증기금	12,429,405	12,328,730	11,470,275	△858,455	△7.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59,174	2,295,675	2,016,242	△279,433	△12.2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3,676,515	4,892,360	4,897,189	4,829	0.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345,682	3,463,019	4,641,030	1,178,011	34.0
합 계	29,371,784	34,053,249	33,978,098	△75,151	△0.2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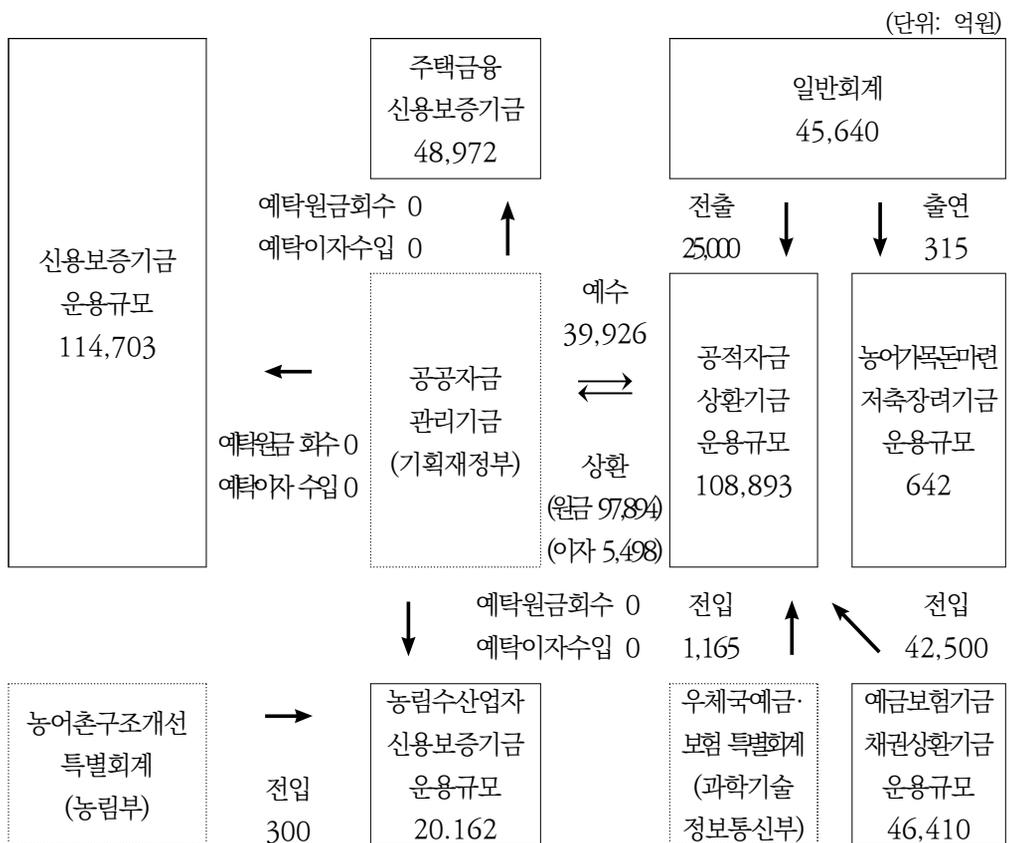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5,000억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315억원을 출연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조 7,894억원의 예수금을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 2,500억원을 전출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마.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3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400만원(3.7%)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3명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29,124	31,853	33,037	1,184	3.7
- 본부 인건비	23,873	25,841	26,747	906	3.5
- FIU 인건비	5,251	6,012	6,290	278	4.6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금융위원회	333	330	△3	△0.9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95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만원(13.1%)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0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원(5.1%)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800만원(19.7%) 증가하였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7,260	8,414	9,518	1,104	13.1
- 총액인건비 대상	3,259	3,852	4,058	206	5.1
- 총액인건비 비대상	4,001	4,562	5,460	898	19.7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서민금융지원 비중이 높아졌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1.6조원이 편성되었으며, ②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2023년에 이어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③ 기업혁신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이 신규편성(500억원)되었고, ④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성장펀드 예산(2023년 3,000억원 → 2024년 2,4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예산이 신규편성(1,000억원)되었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핀테크 지원 사업의 테스트비용 지원 내역사업은 테스트비용 지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지원사업 시행세칙」이 대상기업의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국고보조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참여기업의 자부담에도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신생 핀테크기업의 사업역량 제고 유인이 떨어지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둘째, 2022년 9월부터 관련 대출상품을 공급 중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소수의 금융기관만이 보증상품 취급에 참여 중이므로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공급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트랙”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부합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자대상에서 경기·인천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매월 15만명이 신규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인 2024년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의 78%인 14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현재까지의 채권매입 실적, 매입자금 확보 상황 및 재정출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채 발행자금을 통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24년 재정 출자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2,406억 7,1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서민금융진흥원출연(햇살론15)’ 사업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서민금융진흥원출연(햇살론15)	90,000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자본시장국 기본경비(총액)	59
	자본시장국 기본경비(비총액)	412
합 계		240,671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소송수행비용 등이 있다.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정부의 당초 부실채권 등 매입 계획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3년도 가입자와 2024년도 가입자의 기여금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및 평균보증금액을 감안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소송수행비용 사업의 경우 법률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760,000	480,000	171.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801	499,994	132,193	35.9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56,000	28,000	100
	소송 수행 비용	425	800	375	88.2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1

테스트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재검토 필요 등

가. 현황

핀테크 지원 사업¹⁾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 지원,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2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핀테크 지원	14,367	13,950	12,330	△1,620	△11.6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8,471	7,222	7,042	△180	△2.5
핀테크기업 육성 지원	1,232	2,135	2,374	239	11.2
핀테크 기반구축	1,634	1,656	1,744	88	5.3
핀테크 인력양성	1,840	1,745	-	△1,745	순감
사업 운영 지원	1,190	1,192	1,170	△22	△1.8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 지원, 핀테크 기반구축, 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모든 내역사업에 핀테크 지원 관련 민간 보조사업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모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12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4-301

핀테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그 내역 중 하나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테스트 비용 지원'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26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지원센터가 금융위원회의 보조금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²⁾, 지정대리인³⁾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테스트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

보조사업자인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과 지원센터 내 비용지원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테스트비용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말 현재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으로 위탁테스트를 실시하는 핀테크기업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원 중이다.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5)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거쳐 2년간(1회 연장 가능) 금융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위탁테스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테스트 비용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역
지원목적	테스트 참여 핀테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인력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최대 1.2억 원 지원(총 사업비 1.6억 원의 75% 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 절차	신청접수 → 비용지원평가위원회의 수혜기업 선정 및 신청내역 검토·조정 → 비용지원 → 점검 및 사후관리

자료: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테스트비용 지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지원사업 시행세칙」은 대상기업의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국고보조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참여기업의 자부담에도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신생 핀테크기업의 사업역량 제고 유인이 떨어지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지원센터는 테스트비용 지원대상 선정과 비용지원 기준 등을 규정한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지원사업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비용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2023년, 종전에 신청기업 및 테스트 대상 서비스에 대한 평가등급 별로 총사업비 대비 국비지원 비율을 달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한도(1.2억원)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기업에 부담하도록 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평가등급 별로 총사업비 인정기준을 차등하되 평가등급에 관계 없이 동일한 비율(75%)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였다.

[테스트비용 지원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2023년) 이후																			
평가 등급별 지원을 및 총사업비 상한 기준	총 사업비 기준 평가 등급별 차등 지원비율 적용 (S: 75%, A: 70%, B: 65%, C: 60%)	총 사업비 기준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상한은 차등 적용하되, 지원비율은 통일(75%)하여 기업 초과 자부담도 일정 비율(25%)로 적용 (단위: 억원)																			
	국고보조금 지원한도(1.2억 원) 초과 인정 사업비를 기업부담금으로 책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국고보조 금 상한 (75%)</th> <th>기업자부 담 상한 (25%)</th> <th>총사업비 상한 (100%)</th> </tr> </thead> <tbody> <tr> <td>S</td> <td>1.2</td> <td>0.4</td> <td>1.6</td> </tr> <tr> <td>A</td> <td>1.05</td> <td>0.35</td> <td>1.4</td> </tr> <tr> <td>B</td> <td>0.9</td> <td>0.3</td> <td>1.2</td> </tr> <tr> <td>C</td> <td>0.75</td> <td>0.25</td> <td>1</td> </tr> </tbody> </table>	등급	국고보조 금 상한 (75%)	기업자부 담 상한 (25%)	총사업비 상한 (100%)	S	1.2	0.4	1.6	A	1.05	0.35	1.4	B	0.9	0.3	1.2	C	0.75	0.25
등급	국고보조 금 상한 (75%)	기업자부 담 상한 (25%)	총사업비 상한 (100%)																		
S	1.2	0.4	1.6																		
A	1.05	0.35	1.4																		
B	0.9	0.3	1.2																		
C	0.75	0.25	1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경된 테스트비용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등급 별로 총사업비 인정 금액은 차등하고 있으나, 평가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과 해당 기업의 자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고정함으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평가등급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국고보조를 받고 동일한 자기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등급은 상이하나 총사업비가 상한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상한규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되며, 그 결과 동일한 국고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다음 쪽 예시 참조). 이로 인해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현 제도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동일한 총사업비 규모의 기업 지원액 사례 예시]

구 분	총사업비 소요	평가결과	국고보조 (75%)	자기부담 (25%)	비고
기업A	1억원	S등급	7,500만 원	2,500만 원	국고보조 상한 1.2억원
기업B	1억원	C등급	7,500만 원	2,500만 원	국고보조 상한 0.75억원

자료: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지원사업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작성

[비용지원위원회의 평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제수행능력: 전문성 및 사업역량, 재무건전성, 기술의 혁신성 등 2. 기대효과: 시장의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 구체성: 시범 운영 및 이용자 모집계획, 자금확보 계획 등 4. 타당성: 비용신청의 타당성 등 5. 적정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기업의 자부담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 본 사업의 국고보조 및 자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6.0%였던 지원기업의 자부담액 비중이 2023년 8월 현재 25.0%로 하락한 상황이다.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률 제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점검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수요 관리를 위하여 자부담 신규 설정 및 자부담률 제고 등을 통해 민간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국고보조 및 자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8.
국고보조 (비중)	4,682 (65.1)	4,468 (67.0)	3,950 (64.0)	2,074 (75.0)
자부담 (비중)	2,502 (35.9)	2,200 (33.0)	2,226 (36.0)	691 (25.0)
합 계 (비중)	7,185 (100.0)	6,668 (100.0)	6,176 (100.0)	2,765 (100.0)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도(8월말 현재) 테스트비용 지원대상 핀테크 기업 현황]

(단위: 만원, %)

참여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베드 비용		
	기업	사업분야	지원금	자부담	총액
위탁 테스트	◆◆◆◆◆	보험	9,000	3,000	12,000
	■ ■ ■ ■ ■	IT	7,500	2,500	10,000
혁신 금융 서비스	◎◎◎◎	인슈어테크	12,000	4,000	16,000
	◆◆◆◆◆	은행	12,000	4,000	16,000
	■ ■ ■ ■ ■	자본시장	9,121	3,040	12,161
	◎◎◎◎	은행	7,500	2,500	10,000
	◆◆◆◆◆	자본시장	9,000	3,000	12,000
	■ ■ ■ ■ ■	인슈어테크	12,000	4,000	16,000
	◎◎◎◎	자산관리	7,500	2,500	10,000
	◆◆◆◆◆	전자금융	12,000	4,000	16,000
	▽▽▽▽	보안/인증	12,000	4,000	16,000
	◆◆◆◆◆	자산운용	12,000	4,000	16,000
	■ ■ ■ ■ ■	인슈어테크	10,500	3,500	14,000
	◎◎◎◎	대출비교	10,168	3,389	13,557
	◆◆◆◆◆	자본시장	12,000	4,000	16,000
	△△△△	송금/결제	11,855	3,952	15,807
	△△△△	송금/결제	9,000	3,000	12,000
	■ ■ ■ ■ ■	대출비교	9,000	3,000	12,000
	◎◎◎◎	송금/결제	2,212	738	2,950
	◆◆◆◆◆	자본시장	12,000	4,000	16,000
■ ■ ■ ■ ■	보험	9,000	3,000	12,000	
합 계			207,356	69,119	276,475
비 율			75.0	25.0	100.0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테스트비용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기업의 자부담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종전 기업의 실제 자부담 비중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종전 실제 자부담 비중을 반영한 국고보조 및 자부담 소요액 산정]

총사업비 ¹⁾	34.7억원	
내역	국고보조	자부담
2022년 실제 자부담 비중을 반영한 소요액	22억원 (64%)	14.7억원 (36%)

주: 1) 현 국고보조율(75%)과 2024년도 예산안(국고보조) 26억원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규모 산출 (26억 원 * 100/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개정된 시행세칙상 기업의 자부담률이 25%로 고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며, 지원센터는 비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자부담분(인정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제외분)에 대해서만 집행관리를 하고 그 외 소요비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원기업들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규모를 파악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2022년 보조금 지원액 외에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닌 자부담률(S: 25%, A: 30%, B: 35%, C: 40%)에 따른 기업들의 자부담 비중 평균(30%)을 2023년 8월말 현재 자부담 비중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자부담률에 따른 자부담액은 실제 소요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전 자부담률을 고려한 국고보조 적정소요 산정]

총사업비 ¹⁾	34.7억원	
내역	국고보조	자부담
2022년 자부담률을 고려한 적정 소요	24.3억원 (70%)	10.4억원 (30%)

주: 1) 위 표의 총사업비 34.7억원

2) 개정 전 자부담 차등비율을 반영(29.1%→30%)한 자부담률 및 국고보조율(70%)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이 일부 평가우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원대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23년도 8월말 현재 테스트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19개 기업이다. 이 중 사업 시작연도인 2019년 이후 4개연도 이상 지원받은 기업 수는 14개로 75.0%에 해당하며, 3개연도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수는 18개로 95.3%에 달한다.

[2023년도 8월말 현재 테스트비용 지원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4년 이상	3년	2년
혁신금융서비스 수 (기업 수)	19	14	4	1
지원액	1,909	1,431	388	90
비율	(100.0)	(75.0)	(20.3)	(4.7)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비용지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일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⁷⁾에 치중된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비용지원 신청을 하지 않게 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즉 사업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2년 비용지원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기업 34개 중 12개 기업이 4년 동안 지원받은 기업이었고, 그 중 10개 기업이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비용지원이 같은 해 종료되었다. 또한, 2023년 8월말 현재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19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중 2023년과 2024년 1분기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의 숫자는 각각 4개(지원액 4억 5,000만원)와 3개(지원액 2억 8,500만원)이다⁸⁾.

7) 보조사업자인 지원센터의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지원사업 시행세칙」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핀테크기업의 과제수행능력, 서비스의 기대효과, 계획의 구체성, 비용신청의 타당성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8)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중 2023년 및 2024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수는 11개이고, 2023년 지원액은 10억 7,855만원이다.

지원센터 내 비용지원평가위원회의 비용지원 대상 선정은 핀테크기업의 과제수행능력, 서비스의 기대효과, 계획의 구체성, 비용신청의 타당성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의 비용지원이 타 핀테크 기업에 비해 경쟁력과 비용지원의 타당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대거 종료되는 2023년과 2024년 이후에는 비용지원의 타당성을 갖춘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지정되지 않는 한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참여기업의 추이 및 비용지원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지정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8월말
혁신금융서비스	77	58	50	52	36
지정대리인	18	6	3	-	1
위탁테스트	3	2	-	1	1
합 계	98	66	53	53	38

자료: 금융위원회

가.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¹⁾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을 통한 대위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소요액 전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0억원이 증액된 56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48,000	28,000	56,000	28,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 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률 100%의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되어 2022년 9월 출시되었다.

동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보증을 공급하는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본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 한시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하는 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재정출연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831-881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개요]

구 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목적	연체경험 등으로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
요건	신용점수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15.9%
금리인하 혜택	① 성실상환 시 3년 약정시 연 3.0%, 5년 약정시 연 1.5% 금리 인하 (최대 6%p 금리 인하 혜택 받을 경우 최종금리는 9.9%) 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진행 시 금리 0.1%p 인하(금융교육 의무화)
보증비율	100%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심사방식	상환의지 등 비금융정보도 심사에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9월부터 관련 대출상품을 공급 중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소수의 금융기관만이 보증상품 취급에 참여 중이므로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공급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 출시 당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2022년 9월 중 2개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같은 해 4분기 중 4개 금융기관, 2023년 상반기 중 5개 금융기관이 해당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 금융기관은 3개에 불과하였고, 2023년도(9. 8. 현재)에도 3개의 금융기관만이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 데 그치고 있다. 당초 2023년 상반기 중 출시예정이었던 나머지 5개 금융기관은 10월과 12월에 동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²⁾.

2)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 중이거나 예정 중인 11개 금융기관 중 일반은행은 2개로 모두 지방은행이고, 나머지 9개 금융기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현황]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계획)	대출상품 출시일자	대출상품 출시 예정 시기	
1차 (2022.9.29.)	◎◎은행	2022. 9.29.	
	◇◇은행	2022. 9.29.	
2차 (2022.4분기)	◆◆저축은행	2022.11.14.	
	□□저축은행	2023. 3.13.	
	△△저축은행	2023. 5. 3.	
	▽▽저축은행	-	2023.10월 출시 예정
3차 (2023.상반기)	◎◎저축은행	-	2023.10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 9. 8.	-
	●●저축은행	-	2023.10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	2023.12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	2023.12월 출시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현재 판매 중인 특례보증 대출상품의 공급규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기관 간 체결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협약에는 각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공급규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자체설정 한 월별·연간 공급규모는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총 공급규모를 보면, 2023년 8월말 기준 대출상품을 취급 중인 5개 금융기관이 12개월간 실행한 신규 대출 건수는 10만 3,301건이고 대출금액은 2,702억 2,800만원으로, 1개월당 평균 225억원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급량을 예측하면 2023년까지 3,800억 원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³⁾, 2024년 2,800억 원 공급목표에도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3) 월평균 22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3년말까지 총 3,603억원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24년에는 2,700억원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대출인원과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최근 3개월(6월~8월)의 월평균 대출액(167억원)을 바탕으로 예측 시에는 상품출시 후 2023년 말까지 총 3,371억원의 대출(당초 목표의 88.7%)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에는 2,006억원(예산안 목표의 71.6%)이 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9.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2023.4.	2023.5.	2023.6.	2023.7.	2023.8.	합계
신규	건수	3,619	11,748	10,763	8,078	8,665	8,890	11,221	13,403	8,128	6,851	6,242	5,693	103,301
	금액	11,526	34,808	33,007	20,854	22,000	21,111	26,354	31,192	19,226	17,438	16,910	15,802	270,228
기말 (잔액)	건수	3,619	15,203	25,633	33,190	41,197	49,336	59,541	70,850	77,436	78,692	83,404	84,517	
	금액	11,526	45,810	77,663	96,689	116,435	135,079	158,123	183,001	197,304	198,903	211,087	214,311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8월말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발급한 보증 건수와 실제 대출받은 특례보증 대출 건수와의 차이는 1만 1,471건으로 보증서 발급건수의 약 10.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보증서 발급 건수와 대출실행 건수의 차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증서 발급 이후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심사가 거절된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월별 보증서 발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9.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2023.4.	2023.5.	2023.6.	2023.7.	2023.8.	합계
보증 공급 (대출실행)	건수	3,619	11,748	10,763	8,078	8,665	8,890	11,221	13,403	8,128	6,851	6,242	5,693	103,301
	금액	11,526	34,808	33,007	20,854	22,000	21,111	26,354	31,192	19,226	17,438	16,910	15,802	270,228
보증서 발급 (서금원→신청자)	건수	4,001	11,994	10,690	8,185	8,915	9,093	12,233	14,064	11,200	9,549	7,983	6,865	114,772
	금액	12,733	35,464	32,805	20,894	22,604	21,580	28,712	32,700	27,094	25,354	21,238	19,285	300,463

주: (보증서발급 후 대출미실행) 대출실행 예정, 대출의사 철회, 보증서 발급 이후 연체 발생, 은행 대출심사 거절 등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특례보증 상품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 등 상대적으로 급박한 자금 위기에 있는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외에도, 금융기관의 월별 공급규모 제한 등 공급상의 원인으로 인해 동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만이 특례보증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 사정에 따라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지하거나 공급 규모를 줄일 경우에는 정부의 공급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출시를 준비 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동 상품 취급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공급가능 규모를 늘려 외부변수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2023년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을 비롯한 재정이 투입되는 특정 목적의 서민금융정책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내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방안에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⁴⁾. 방안 마련 관련 주요일정과 현재까지 결정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이 보증공급에서 직접대출로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예산도 이에 맞추어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방식이 직접적으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서민금융 지원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예산안 심사 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일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정부는 2023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다른 정책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증자리론을 공급하였는데⁵⁾, 이 사례와 같이 국회 심사를 거친 예

4)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보증 상품이 아닌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민금융 문턱 낮춘다…‘햇살론’ 통합에, ‘직접대출’ 시범사업도. 중앙일보. 2023. 7. 16.)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고금리·변동금리부 대출의 저금리·고정금리부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금(1,0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 사업 등 2024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기존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다.

가. 현황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¹⁾은 민간자본과 민간의 사업성 평가기법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금을 5년 동안 1조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연간 1,000억원(총 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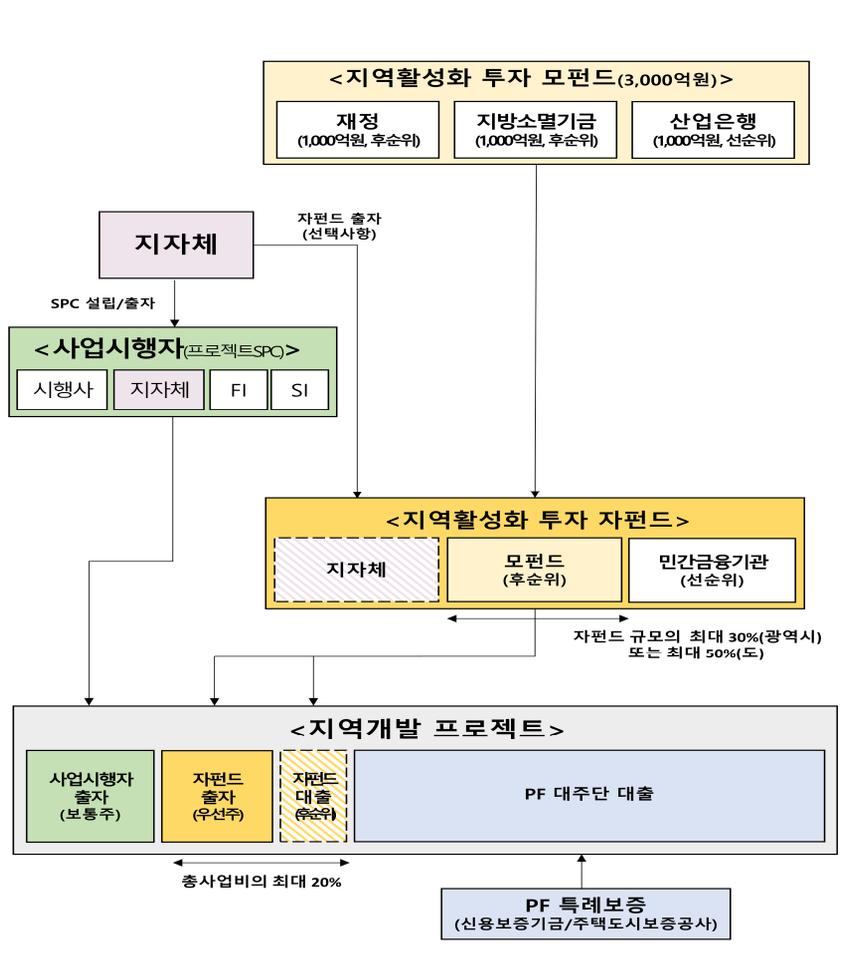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2023.7.12.)을 통해, 현재의 지역투자 방식은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과 지역 간 형평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단발적이고 소규모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엄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실정에 맞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펀드 방식’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2414-320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의 산업은행 출자분 1,000억원, 산업은행 자체 출자분 1,000억원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모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자펀드는 지자체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세부 구조(안)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2023.8.31.)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프로젝트의 대상에 대해서는 펀드 취지와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인데,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조성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프로젝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트랙”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의 부합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추진 배경 및 펀드의 주요 운영방안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31일에는 모펀드 투자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2023.8.31.)’을 발표하였다. 동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재정, 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액으로 조성된 모펀드의 투자와 관련하여 모펀드 출자기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거침에 따라 시의성 있는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가 되는 점,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수익성, 사업 타당성 등 검증장치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 사업 타당성 등이 월등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장관급 회의체 의결 등을 거쳐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면제트랙), ②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소요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개최를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전용 패스트트랙)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1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 등

- (개선방안) 모펀드 투심위 등을 통한 수익성, 사업 타당성 등 검증장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투자심사 면제 Track 또는 ②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Fast-Track 운영
 - ① (면제 Track) 사업 타당성 등이 월등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장관급 회의체 의결 등을 거쳐 재정투자심사 면제
 - *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예비검토(최소 2개월) → 재정투자심사 면제
 - ② (전용 Fast-Track)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소요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최소 4~5개월까지 소요기간 단축
 - * 타당성조사(모펀드 투심위 심사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최대한 기간 단축), 재정투자심사(현행 3개월/분기별 1회 개최 → 즉시 심사/수시 개최)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2023.8.31.) (관계부처 합동)

2023년 4월 1일 개정되어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34호)」(이하 “시행예정법률”)은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행예정법률 제37조2)제3항은 투자심사 제외

2) 「지방재정법」(법률 제19334호, 2024.1.1. 시행)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상으로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면제 트랙은 지자체의 투자가 시행예정법률의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 월등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경제관계장관회의의3)를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예정법률은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위임 없이 제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제2항제11호를 심사면제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시행예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예정법률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로 보기 어려운 바 시행예정법률의 시행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연계되어 개정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예정법률의 면제규정은 예시규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므로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를 통한 지자체의 투자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사전 검토·심의를 이유로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법률 개정의 취지⁴⁾가 종전에는 법률이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제외대상을 일부 규정하고 그 외의 제외대상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예정법률의 투자심사 면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시행예정법률의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시행예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운용 상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대상에서 경기·인천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2023.8.31.)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대상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은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기업·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

4) [212080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외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7조의2 등).

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현상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 구성에 참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동 기금은 매 해 1조원의 정부출연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강화군, 옹진군(인천)과 가평군, 연천군(경기)이 포함 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치분권법」) 및 동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지자체로서, 「자치분권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포함)·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고령인구·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외에도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89개 기초지자체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대상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내 4개 인구감소지역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자치분권법」⁵⁾이 국가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펀드의 기본 운영방향이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제 운용을 통해 진행되는 투자사업의 주된 수혜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와 민간의 실수요 확인 및 해당 수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총 15조원의 지자체 프로젝트 총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수요 확인과 해당 수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3조원 이상⁶⁾의 프로젝트 총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펀드 출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광역지자체(전남, 경북, 강원)와의 3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한 차례의 투자설명회⁷⁾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⁸⁾. 이와 같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매년 3조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총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과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자 등의 검증을 통한 사업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프로젝트 출자 및 자금 차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⁹⁾. 참고로 지역활성화 투자

6)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7.12) 후속조치 주요내용(관계부처 합동, 2023.8.31.)

1. 모펀드 조성

- (조성 규모)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 ※ 정부자금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
-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 최소 10배 레버리지(3조원) 예상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7) 간담회[경상북도(2023.8.7.), 전라남도(2023.8.8.), 강원도(2023.8.17.)] 및 전 지자체 대상 투자설명회(2023. 9. 22.)

8) “풍부한 관광자원, 혁신적인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청정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시설 등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광역지자체인 강원도가 지역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써 등 펀드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재부 2차 관, 제3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현장 간담회 개최”. 2023.8.17.)

9) 정부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파악된 지자체의 투자유치 희망 사업은 총 40여 개로 이에 대한 모펀드의 투자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거친 투자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펀드의 한계와 관련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수익성의 영역은 재정사업 영역, SOC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 영역과 비교하여 좁을 수 있다는 의견¹⁰⁾이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펀드와 지자체, 민간의 투자를 통한 사업시행자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 계획은 SPC 자본금 의무비율을 총사업비의 10% 이상¹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최소 의무비율을 제외한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자펀드와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로젝트 자펀드 조성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본금 출자가 성공하더라도 부지매입 및 시공 등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PF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실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 부실화 우려 제기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인을 기반으로 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없는 한 프로젝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SPC에 대한 PF대출에 대해 특례보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나, 해당 기관들의 보증공급은 모펀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들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한 보증공급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상기의 사실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기본운영 방향이 모펀드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사업이나 공익성 충족요건 등에 대해 제한¹²⁾을 두지 않고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투자유치 대상을 선정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모펀드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본 사업의 설계에 앞서 지자체의 투자 유치 희망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1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한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공성과 투자 사업성이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나, 전체 수익성 영역에서 매우 좁은 공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기존 SOC민간투자 사업 영역과 민간사업 영역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방투자사업」, 김상기, 2023.8.10.)

11)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안정적 PF대출 상환구조 사업은 3% 이상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투자 TF, 2023. 8.)

12)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 일부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유형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5년간 매년 3,000억원의 모펀드 출자를 통해 총 15조원 이상의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도모하는 본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¹⁾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21억 9,300만원이 증액된 4,999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367,801	499,994	132,193	35.9
기여금 지원	-	344,037	489,043	145,006	42.1
인프라 구축	-	23,610	10,447	△13,163	△55.8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	-	154	504	350	227.3

자료: 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의 기여금 매칭 지원을 위한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으로 4,890억 4,300만원, 가 구조소득 심사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심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으로 104억 4,7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홍보 및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과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전액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다.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은 2023년 7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831-882

는 사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분위별로 기여금 매칭 비율을 달리하여 본인납입금에 대한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구 분	내 역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9세~34세) - 개인소득 요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가입기간	5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개인소득</th> <th rowspan="2">본인 납입한도(月)</th> <th rowspan="2">기여금 지급한도(月)</th> <th rowspan="2">기여금 매칭비율</th> <th rowspan="2">기여금 한도(月)</th> </tr> <tr> <th>총급여 기준</th> <th>종합소득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2,400만원¹</td> <td>1,600만원¹</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70만원</td> <td>40만원</td> <td>6.0%</td> <td>2.4만원</td> </tr> <tr> <td>3,600만원¹</td> <td>2,600만원¹</td> <td>50만원</td> <td>4.6%</td> <td>2.3만원</td> </tr> <tr> <td>4,800만원¹</td> <td>3,600만원¹</td> <td>60만원</td> <td>3.7%</td> <td>2.2만원</td> </tr> <tr> <td>6,000만원¹</td> <td>4,800만원¹</td> <td>70만원</td> <td>3.0%</td> <td>2.1만원</td> </tr> <tr> <td>7,500만원¹</td> <td>6,300만원¹</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¹	1,600만원 ¹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¹	2,600만원 ¹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¹	3,600만원 ¹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¹	4,800만원 ¹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¹	6,300만원 ¹	-	-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¹	1,600만원 ¹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¹	2,600만원 ¹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¹	3,600만원 ¹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¹	4,800만원 ¹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¹	6,300만원 ¹		-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 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월 15만명이 신규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인 2024년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의 78%인 14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규모를 예측하고 가입자에 대한 2024년 말까지의 기여금 지급소요(8,330억원)를 산정한 후, 기 편성된 2023년 기여금 예산액(3,440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여금 소요액(4,890억원)을 산출하였다.

[2024년도 기여금 지급 예산안 산정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7월~12월)	2024년	기여금 소요 [예산(안)액 합계]
기여금 소요	726	7,604	8,330
예산(안)액	3,440	4,89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의 2023년 및 2024년도 기여금 지급소요 산정 내역]

(단위: 만명, 억원)

구분	가입시기		1인당 월 기여금	지급개월	대상자 수	기여금 총액
	연도	월				
23년	23년	7	2만원	6	24.9	299
		8		5	12.5	125
		9~12		4~1	평균 15.1	302
	소 계					97.8
24년	23년	7~12	2만원	12	97.8	2,349
	24년	1~2	2만원	12~11	평균 15.1	696
		3		10	160.0	3,200
		4~12		9~1	평균 15.1	1,359
	소 계					423.9
23년+24년					423.9	8,330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및 2024년 기여금 지급 규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가정 하에 기여금 소요액을 예측하고 있는 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소요액을 재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예산안은 기존 가입자의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또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분기당 5%대의 해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 금융상품의 만기시점인 2024년 3월까지 당초 가입자의 65%만이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개, %)

구분	2022년					2023년	
	3월(출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계좌 수	2,868	2,844	2,701	2,567	2,414	2,285	2,173
해지계좌 수	-	24	143	135	152	129	112
해지율	-	0.8	5.0	5.0	5.9	5.3	4.9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기여금을 매칭받기 위한 가입유지 기간(만기)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유지를 포기하는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8월까지의 해지계좌 수를 집계 중으로 관련 통계를 10월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가입한다는 추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통계를 보면 2023년 7월 25.3만명, 8월 12.5만명, 9월 4.4만명이 동 계좌를 개설하여 신규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매월 15만명의 신규가입을 가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

가입시기	2023.7.	2023.8.	2023.9.
가입자 수	25.3	12.5	4.4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 예상인원(186만명)의 78%에 해당하는 145만명이 해당 저축의 만기시점인 2024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한다고 가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36개월인 시중 자유적립식적금²⁾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상회하는 장기저축으로, 종전 2년 간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였던 이용자의 10명 중 8명이 다시 가입기간 5년의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인원 중 청년희망적금 유지 기간 중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인 34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³⁾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상정한 145만명이라는 일시가입 규모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사업은 신규가입자 규모와 가입유지율 등 향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사업의 수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202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적정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상품금리비교에 제시된 자유적립식적금 상품 중 36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조건에 가구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기 제출한 예산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유지한 사람이 만기수령액을 일시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해 기여금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4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월별 납입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 가입자 등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18일,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유지한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월 납입한도 적용을 배제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반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일시에 지급⁴⁾하되, 일시납입액을 일반가입자의 월별 납입액 수준⁵⁾으로 나눈 개월 수 동안은 신규 납입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일반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신규 납입을 허용하여 5년간 총 납입한도는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4,200만원⁶⁾으로 제한하는 것이 동 집행계획의 골자이다⁷⁾.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한 사람이 월별 납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총 정부기여금은 월별납입자와 같은 수준을 지원받게 되지만, 이자의 경우 일시납입액 전부와 해당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에 대해 가입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월별 납입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해 일반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시납입이 가능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일시납입 여력이 있는 사람⁸⁾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4) 이에 따라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제출하였던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자의 가입에 따른 월별 정부기여금 합계인 2,900억원 대비 2,361억원이 증가한 5,261억원을 정부기여금으로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5) 금융위원회는 일시납입 가입자가 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6) 70만원(월 납입한도) * 60개월

7) 그 외에 금융위원회는 1인당 기여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2만원 → 2.21만원)하고, 매월 신규가입자 규모를 15만명에서 60,000명~75,000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중도해지율을 반영하여 기여금을 산정하였다.

8) 청년희망적금 외 저축상품 운용 등을 통한 일시납입 여력이 있는 사람 등을 예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청년세대 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202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⁹⁾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자산형성과 특정 국가정책적 목표와의 연계보다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면서 가입자 확대를 도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중년·노년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¹⁰⁾.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일시납입에 따른 혜택 예시]

기 간 (60개월분)	청년도약계좌(비과세) 납입		일반저축(과세) (C)
	일시납입 (A)	월별납입 (B)	
납입액	4,200만원	4,200만원	4,200만원
이자(세후) + 지원금	740만원 (지원금 144만원)	694만원 (지원금 144만원)	333만원 (지원금 없음)
	이자(세후)	596만원	333만원
만기 환급액(납입액 + 이자(세후)+지원금)	4,940만원	4,894만원	4,533만원
차이 (A 대비)	-	△46만원	△407만원
만기 수익률	17.6%	16.5%	7.9%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과세대상인 청년도약계좌는 연 납입한도가 84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9)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국회예산정책처(2022.10.)

10) 금융위원회 설명자료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하여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과 일반저축을 이용한 사람과의 만기환급금 차이가 407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실집행 가능성이 제기될 우려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부족한 사업수요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대규모 세수 부족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00억원이 증액된 7,6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600,000	280,000	760,000	480,000	171.4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최초 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조치 등에 따른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부실차주²⁾와 부실우려차주³⁾의 협약금융회사 보유 대출⁴⁾에 대한 원금 조정,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및 조정, 거치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2)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3)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및 부실우려차주(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 중소기업창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외 업종(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지원규모	총 30조원
대상대출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대출 무관)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 총 15억원 한도(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 원금조정 無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부실차주의 담보부채무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 거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

자료: 금융위원회

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채권 매입분 중 최종 부도처리(자본손실) 예상액에 대해 정부가 연차별로 출자하고, 정부 출자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자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2025년까지 재정 출자 3.6조원, 공사채 발행 14.4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총 30조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편성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총 1조 1,000억원(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2,800억원을 현금출자하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2.10월~	2023	2024(안)	2025	합 계
매입목표	6	9	9	6	30
(매입가 ¹⁾ 기준)	(3.6)	(5.4)	(5.4)	(3.6)	(18)
재정출자계획	1.1	0.28	0.76	- ²⁾	3.6
(실행 ³⁾)	(1.1) ⁴⁾	(0.28)	-	-	-
공사채발행계획	2.5	2.9	5.4	3.6	14.4
(실행 ³⁾)	(-)	(-)	(-)	(-)	(-)

주: 1) 매입가율 60% 적용

2) 3조 6,000억원 중 잔여분 편성계획

3) 2023년 8월말 현재

4)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현재까지의 채권매입 실적, 매입자금 확보 상황 및 재정출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채 발행자금을 통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24년 재정 출자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15조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총 1조 3,800억원의 재정출자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 8월말까지 7,167억원을 투입하여 1조 8,106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데 그치고 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개월당 1조 1,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당초 목표의 약 16.4% 수준인 월 1,811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 매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11.~ 12.	2023.1.~ 8.	합 계
매입 채권액	2,952	15,154	18,106
매입가액	863	6,304	7,167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현재까지의 월별 매입규모는 의미 있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3년 7월과 8월에 매입가액과 매입 건수의 등락 폭이 큰데,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한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실시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절차상의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3년 7월·8월의 월평균 매입채권가액은 1,680억원으로 6월 매입채권가액(1,859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신청현황 ¹⁾		매입현황		
		채권가액	신청건수	채권가액	매입건수	매입가액
2022	10월 ²⁾	11,520	7,958	-	-	-
	11월	5,127	3,607	749.6	7,772	363.8
	12월	4,288	3,130	2,202.3	17,664	499.5
	소계	20,935	14,695	2,951.9	25,436	863.3
2023	1월	4,022	2,829	1,692.7	13,769	405.5
	2월	4,208	2,650	2,221.6	22,040	610.9
	3월	5,120	3,263	1,777.5	15,143	825.7
	4월	3,756	2,356	2,113.6	22,043	946.9
	5월	4,216	2,453	2,130.5	24,094	976.0
	6월	3,963	2,305	1,859.0	19,146	795.8
	7월	4,259	2,471	576.1	5,086	311.4
	8월	5,057	2,781	2,783.5	32,130	1,431.6
	소계	34,601	21,108	15,154.5	153,451	6,303.8
합 계		55,536	35,803	18,106.4	178,887	7,167.1

주: 1) 2023년 1분기말 기준 새출발기금(중개형·매입형) 신청현황으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되어 이후 변동 가능

2) 사전신청 기간(9.27~9.30) 포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3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매입에 1조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8월말까지 실제로 매입에 소요된 금액은 6,303.8억원(49.2%)에 그치고 있다. 남은 4개월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1,624억원을 매입하여야 달성가능한 규모이다. 그런데 위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채권매입에 소요된 금액은 매달 평균적으로 788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매입가액이 가장 많았던 8월에도 1,431.6억원으로 월별 평균 추정 매입가액인 1,624억원의 88.1%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른 1조 2,800억원의 채권매입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 매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매입 추정액(a)	2023.1.~ 8. 매입 실적치(b)	잔액 (c=a-b)	4개월 평균 (c/4)
매입가액	12,800	6,304	6,496.2	1,624.05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금융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채권 매입가율을 6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담보 채권(0~35%), 담보·보증부 채권(85%)의 매입가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8월말 기준 매입채권액(누계) 1조 8,106억원 대비 매입가액(누계) 7,167억원을 바탕으로 한 실제 매입가율은 39.6%로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예측 매입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 매입가율 등(2022.11.~2023.8.)]

(단위: 억원, %)

구 분	무담보부	담보부	기타 ¹⁾	합계
매입 채권가액(A)	10,744	1,779	5,583	18,106
매입가액(B)	3,814	1,562	1,791	7,167
매입가율(B/A)	35.5	87.8	32.1	39.6

주: 1)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제도의 특성상 무담보채권의 매입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기준 평균 매입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은 상황이나, 향후 경기가 보다 둔화될 경우 담보부 채권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매입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담보부 채권의 매입비중은 2023년 3월 대비

8월 기준으로 약 2.2%p(매입가액 기준, 19.6%→21.8%)가 상승하였으나, 그럼에도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매입가율과 현재까지의 실제 매입가율 차이는 20%p를 초과하는 수치로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기간별 누계액]

(단위: 억원, %)

구 분 (월말 누계)	매입현황			
	유 형 구 분	채권가액(A) (유형별비중)	매입가액(B) (유형별비중)	매입가율(B/A)
2022. 12.	무담보	2,061.0 (69.8)	481.3 (55.7)	23.4
	담 보	304.9 (10.3)	260.1 (30.1)	85.3
	기 타	586.0 (19.9)	121.9 (14.1)	20.8
	합 계	2,951.9 (100.0)	863.3 (100.0)	29.2
2023. 3.	무담보	5,311.2 (61.4)	1,489.7 (55.1)	28.0
	담 보	605.6 (7.0)	530.1 (19.6)	87.5
	기 타	2,726.9 (31.5)	685.6 (25.3)	25.1
	합 계	8,643.7 (100.0)	2,705.4 (100.0)	31.3
2023. 8.	무담보	10,744.1 (59.3)	3,814.3 (53.2)	35.5
	담 보	1,779.2 (9.8)	1,561.9 (21.8)	87.8
	기 타	5,583.1 (30.8)	1,790.9 (25.0)	32.1
	합 계	18,106.3 (100.0)	7,167.1 (100.0)	39.6

주: 기타: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자료: 금융위원회

위와 같이 채권매입 규모가 당초 계획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출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확대되던 부채비율이 2021년부터 감소하여 2022년 말에는

145.1%, 2023년 6월 말에는 130.8%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2021~2023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자금 2조원으로 인하여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반해,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는 자본의 증가보다 작게 증가하여 부채비율(2020년 12월 말 193.9%→2023년 6월 말 130.8%)을 중심으로 한 재무건전성의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2년에 자산이 2021년 대비 2.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0.9조원은 정부 현금출자액으로 인한 현금성 자산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부출자액이 정책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도별 재무현황 및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자본금	잔액	860,000	860,000	949,566	1,611,900	2,711,900	2,991,900
	증감	-	-	89,566	662,334	1,100,000	2800,000
자본		1,869,004	1,895,478	2,001,924	2,748,695	4,028,932	4,225,865
부채		2,190,405	3,001,745	3,882,557	4,753,448	5,847,039	5,526,911
당기순이익		72,143	66,826	55,427	54,602	60,834	62,946
부채비율		117.2	158.4	193.9	172.9	145.1	130.8

주: 2023년은 6월 말 현재 및 6월까지의 반기순손익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가 재정 자금을 출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당초 목표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매입가율도 당초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계획은 정부 출자분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대금 투입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23년 중 3,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매입자금 확보와 대출채권 매입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손실 예상분 보전을 위하여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채권매입 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적절한 채권매입가율을 바탕으로 한 매입소요액의 산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매입자금 분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408억 3,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65억 9,000만원(862.2%) 증가하였다.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363	4,244	40,834	36,590	862.2

주: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644억 5,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억 3,300만원(9.4%) 증가하였다.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8,189	58,924	64,457	5,533	9.4

주: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45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600만원(4.0%)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및 전년 대비 공무원 인력(5급 3명) 및 실무수습 인력(7급 3명), 청년보좌역 인력(전문임기제 다급 1명) 정원증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2,418	13,988	14,544	556	4.0
· 본부 인건비	12,418	13,988	14,544	556	4.0

주: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1	174	3	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2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3.6%)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6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5.7%)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6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2.8%) 증가하였다.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857	2,215	2,295	80	3.6
총액인건비 대상	496	596	630	34	5.7
총액인건비 비대상	1,361	1,619	1,665	46	2.8

주: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전 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추진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권리를 구체화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2024년 75억 4,600만원), ②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2023년 31억 9,700만원 → 2024년 76억 5,000만원), ③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 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2023년 30억 3,400만원 → 2024년 42억 6,400만원)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표가 개인정보의 유연하고 안전한 활용임을 고려하여,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기관”의 성격과 활용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및 기관별 매칭비율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서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75억 4,600만원 규모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이종 산업분야 간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전송 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쏠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546
합 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등이 있다.

①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확대 개편 소요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②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권리를 구체화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전송 인프라 등 실증사업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정책 연구 등 정책 기반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034	4,264	1,230	40.5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3,197	7,650	4,453	139.3

주: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성격 및 활용도에 따른 재정지원 검토 필요

가. 현황

가명처리 기술지원 사업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²⁾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결합·반출에 대한 기술지원,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4,929	4,992	3,328	△1,664	△33.3
가명처리 기술지원	1,411	1,657	2,537	880	53.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은 ①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명처리 활용 내역인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③ 지역(강원, 부산 등)을 거점으로 가명처리 활용을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2-302의 내역사업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그리고 ④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처리를 지원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④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11억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 2024년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보안장비(860만원), 서버 등 인프라(1억 3,200만원),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시스템·솔루션(2억 2,940만원)등, 자산취득비로 총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인건비(1억 2,550만원)와 이용계획 및 결과물 심사(9,450만원)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개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안	항목	산출근거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 지원	자산취득비	370	보안장비	• 고정형 CCTV - 900천원 × 5개 = 4,500천원
				• 출입통제장치 - 500천원 × 5개 = 2,500천원
				• PC 바이오인증 장비 - 200천원 × 5개 = 1,000천원
				• 보안USB - 200천원 × 3개 = 600천원
				• 서버 - 15,000천원 × 8대 = 120,000천원
			인프라	• 네트워크 구축비 - 12,000천원
				• 데이터 분석 SW - 5,000천원 × 5종 = 25,000천원
			시스템·솔루션	• 가명처리 SW - 6,000천원 × 5종 = 30,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인호화, 데이터파기SW 등 - 67,700천원 × 2종 = 135,400천원
				• PC 모니터링 시스템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매체제어 시스템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데이터 반출·입시스템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심사비	220	인건비	19.6 × 2명 × 10개월 × 32% 참여 = 125.5
			이용계획 및 결과물 심사	300천원 × 7명 × 3회 × 15건 = 94.5
소 계		590		
합 계		1,180		590 × 2개소 지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사업의 목표가 개인정보의 유연하고 안전한 활용임을 고려하여,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기관”의 성격과 활용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및 기관별 매칭비용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사업은 개인정보 활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결합전문기관³⁾(데이터전문기관 포함 34개), ②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⁴⁾(4개소) 중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요건(안)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관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가명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보관·활용되는 가명정보의 재사용, 그리고 기술개발·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정보보호·활용 신기술을 대상으로 실증 또는 활용하는 것이다.

3) ◦결합전문기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보다 가치있는 연구와 분석이 가능함

4)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4개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필요한 단계별 업무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강원, 부산, 인천 운영 중이고, 가명처리 실습을 위해 금융·통신·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샘플 데이터셋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반입하여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폐쇄망 환경 제공함

[2024년도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가명처리 기술지원	1,411	1,657	2,537	880	53.1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	354	300	300	-	-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457	457	457	-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600	900	600	△300	△33.3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	-	1,180	1,18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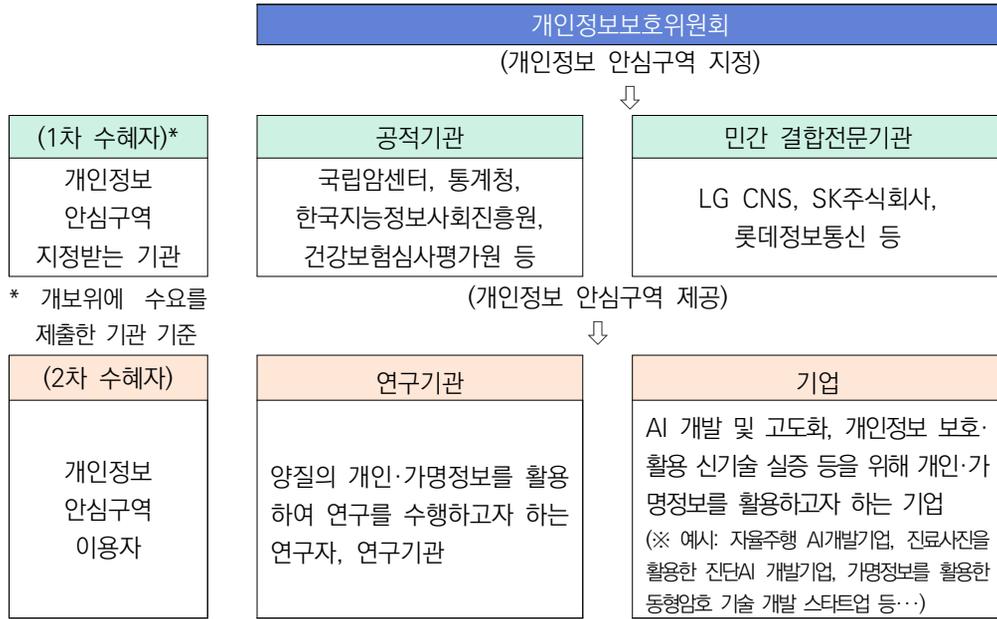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예산안에 신규 추가된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사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대)기업 전문가·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명처리 수준을 보다 완화하여 가명정보를 장기적으로 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심의 후 분석결과물의 반출도 허용하다는 측면에서 가명처리 기술지원사업 내 주로 컨설팅 지원과 거점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사업은 분석결과물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환경적 안전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 심의를 수행하고, 분석결과물의 반출심사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는 결합전문기관(1차 수혜자)은 성격에 따라 공적기관과 민간 결합전문기관으로 나뉘고 1차 수혜자는 i)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지식·기술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ii) 결합률 제고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이 가능해지며, iii) 결합수수료 부과를 통한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1·2차 수혜자 예상 구상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기업이나 연구기관(2차 수혜자) 입장에서는 i)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장기활용·재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비용·시간을 투입하여 어렵게 생성·결합한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즉시 파기하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ii)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의 최소화 및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며, iii)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샘플링 검사 후 활용이 가능해져, AI 개발·고도화에 따른 몇 만장 이상의 빅데이터(가명정보) 활용 시 각 데이터가 제대로 가명처리 되었는지 확인·검수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지정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효과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결합전문기관별 성격과 활용도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2차 수혜자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비용 및 시간 투자 등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가명정보) 활용 시 각 데이터가 제대로 가명처리 되었는지

확인·검수가 필요한 분야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⁵⁾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안정성·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 심의를 지원하므로 정부 차원의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적 기관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경우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개인·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2차 수혜자인 기업은 영업비밀 및 보안상의 목적, 경쟁기업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다른 기업·연구자가 안심구역을 이용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동시에 동 기관의 활용도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수요기관(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시 예상 이용 건수는 총 36건⁶⁾으로 공적기관(평균 9건) 대비 민간기업(평균 4.5건)의 예상 수요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사업의 목표가 개인정보의 유연하고 안전한 활용임을 고려하여,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성격과 활용도에 따라 동 사업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및 기관별 매칭비율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이미지데이터 10만장 샘플링 검사 허용 시 비용절감 산정 예시>

340원(장당 검수비용) × (100,000장^{전체데이터} - 5,000장^{**샘플링검사 데이터}) = 32,300,000원 (약 3천만원 비용 절감 효과 예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크라우드워커 비용 기준 참조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104호)

** 샘플링검사 비용 0.5% 적용 시 (가명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표준 ISO/IEC 27559의 공공데이터 샘플링 조사 권고범위 0.05%~0.5% 참조)

➔ 프로젝트 규모 및 검수 난이도, 샘플링 조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신청 예상 수요기관 대상 가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23.9.6.~10.3.)
- 주요 지정신청 수요기관(5개) 예상 이용건수 합계 총 36건 → 기관당 평균 7.2건

구 분	공적기관			민간기업	
	A기관	B기관	C기관	D기업	E기업
연간 예상 이용건수	15건	6건	6건	6건	3건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사업 내 신규사업 예산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가. 현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이종(異種)산업간 전송체계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마이데이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2,500	3,197	7,650	4,453	139.3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2,500	2,410	5,970	3,560	147.7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	-	1,680	1,680	순증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은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사업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나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이종 산업간 전송체계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대비 3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마이데이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16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2-303

나. 분석의견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서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25억으로 전년대비 순증하였고, 전송인프라 실증사업으로 마이데이터의 전송을 지원하는 플랫폼간 데이터 이동 실증이 14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증하였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2023.8.17.)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별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필요한 데이터 분야·기업 등을 분석하고 기업·전문가 심층조사 등을 종합하여 중점부문·분야(안)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23년 하반기 중 국민·기업의 추가 제안을 받아, 데이터 표준화 수준 및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분석·점검 후 초기 중점부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2021.6.11.) 상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계획과 달리, 마이데이터 사업을 2027년까지 확장하는 등 사업 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2023.8.17.)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10대 중점부문 및 21개 업종(안)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중에 선도서비스를 수행할 분야 및 부문을 지정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부문 및 21개 업종(안) 세부현황]

구분	보건의료	통신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분야 (21개)	의료(병/의원) 의약품(약국)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	무선통신 플랫폼·포털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항공 ·자동차임대	초/중/고등교육 ·평생교육 ·온라인학습	고용알선/ 인력공급	부동산 임대/공급	·사회복지 서비스	온라인쇼핑 ·대형마트	·숙박 ·여행
유관 부처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보훈부	산자부	문체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및 금융 분야 등에서는 이미 개별 법률²⁾에 근거하여 마이데이터가 시행·관리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³⁾를 구성하여,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기존 상용화된 공공데이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 및 금융 부문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상용화되고 있지만, 각 분야 간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전송을 실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도서비스 발굴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야 간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기존 분야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선도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각 부처별 마이데이터 사업개요

[부처별 마이데이터 사업 개요]

구 분	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보건복지부 의료 마이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서비스 지원
정책 목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 기반 마련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유통 기반 마련	환자중심의 의료 혁신을 위한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인정보 활용 실증 서비스 지원
제공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공공기관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기업	실증 수행기업
수혜자	금융서비스 고객	민원인(국민)	환자 및 보호자	실증서비스 이용자
공통 근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별 근거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의료법」 제21조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체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올해 10월까지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기벤처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역할)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선도 프로젝트 발굴, 마이데이터 기업 인센티브 설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등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 논의

그러나 2024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아직 선도서비스를 진행할 부문 및 분야가 미지정된 상태이고,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5건으로 산정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의 내역사업 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항목	산출근거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2,410	5,970	3,560	(가)데이터 표준화 연구	①데이터 형식 표준화: 1,000(전년동) ②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1,000(△410)
				소 계	2,000
				(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신규 서비스 발굴·상용화 지원 및 마이데이터 표준 실증: 선도사업 5건 × 500 = 2,500(순증)
				소 계	2,500
				(다) 전송인프라 실증사업	전송절차 및 보안·인증, 표준적용기술(API규격), 마이데이터 전송지원 플랫폼간 데이터 이동 실증 5건 × 294 = 1,470(순증)
				소 계	1,470
합 계	2,410	5,970	3,560	합 계	5,97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25억원)는 '22년부터 수행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로 전송하고 활용할 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신규서비스 발굴(5건)과 관련하여 개발인건비(85.2%)를 일률적으로 5억씩 산정하여 25억을 편성한 것은 면밀한 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안된 서비스별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연도별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부문]

2022년 ¹⁾		2023년		2024년(예정)
부문	관계부처	부문	관계부처	
유통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국민수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요 등에 따라 신규 표준화 대상 부문 선정 및 기 추진 분야 개선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복지	보건복지부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부동산	국토교통부	
교육	교육부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주: 1) 유통 분야(3개):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국토교통 분야(5개): 철도여객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택배업, 자동차임대업, 모빌리티서비스
 문화여가 분야(4개): 숙박업, 엔터테인먼트, 여행사업, 음식점업
 정보통신 분야(3개): 무선및위성통신업, 포털및인터넷정보매개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
 배급업(OTT등)
 교육 분야(5개):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교육 관련 협회, 일반교습학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2~2023년 진행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부문(10대 부문) 외에 표준화 등이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부처의 직접적인 검토가 추후 필요할 수 있고, 이미 표준화가 완료된 부문도 업데이트 및 오류 수정 등을 이유로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도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79-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506-10

ISBN 979-11-6799-179-9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